

자연·역사·수변 이 만드는 활력도시, 군산

군산시 경관계획

별책보고서

2018



군산시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군산시 경관계획 정비』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브이아이랜드
대표이사 김경인



CONTENTS

| | | | |
|--------------------------------|----------------------------------|--------------------------|-----------|
| 도시지역 및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 1. 계획의 개요 | 1 | |
| | 1.1 계획의 배경 | 1 | |
| | 1.2 계획의 목표 | 1 | |
| | 1.3 계획의 범위 | 2 | |
| | 2. 도시지역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 3 | |
| | 2.1 도시지역 | 3 | |
| |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 10 | |
| | 3.1 서해 및 금강연안 | 10 | |
| | 3.2 금강 | 18 | |
| | 3.3 은파호수공원 | 22 | |
| | 3.4 경포천 | 28 | |
| | 경관협정 매뉴얼 | 1. 경관협정의 개요 | 31 |
| | | 1.1 경관협정이란 | 31 |
| 2. 경관협정의 추진방법 | | 32 | |
| 2.1 경관협정의 조직체계 | | 32 | |
| 2.2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 | 33 | |
| 2.3 경관협정의 체결사항 | | 33 | |
| 2.4 경관협정의 지원방안 | | 34 | |
| 2.5 경관협정의 추진절차 | | 35 | |
|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 | 36 | |
| 3.1 유도단계 | | 36 | |
| 3.2 기획단계 | | 37 | |
| 3.3 체결단계 | | 40 | |
| 3.4 인가단계 | | 44 | |
| 3.5 운영단계 | | 46 | |
| 4. 부록 | | 48 | |
| 4.1 관련서식 | | 48 | |
| 4.2 경관협정 사례 | | 57 | |
| 4.3 경관협정 시범사업 사례 | 75 | | |

도시지역 및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1.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변공간의 가치 저하

- 소규모 어선들의 정박, 노후된 공장 건축물이나 위해시설로 인한 삭막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변과 부조화 및 수변공간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해 질적 수준이 저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의한 도서지역의 개발압력 증대

-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공원의 보존 및 관리 필요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펜션 등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

도서지역 및 수변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부재

- 도서지역, 수변경관에 대한 가치 및 개발압력이 증대함에 따라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도서지역 및 수변경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변경관의 바람직한 보전 · 관리 · 형성 방안 마련 필요

1.2 계획의 목표

■ 도서지역 및 수변의 특성을 고려한 개성 있는 수변공간 형성

-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친환경 친수공간 형성
- 도서지역 및 수변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한 특화된 이미지 확보

■ 도서지역 및 수변지역이 간직하고 있는 생태환경의 보존

- 친환경 개발 유도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훼손된 녹지경관 복원
- 도서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 및 생태 환경 보존을 통한 친환경 경관 연출

■ 도서지역 및 수변경관 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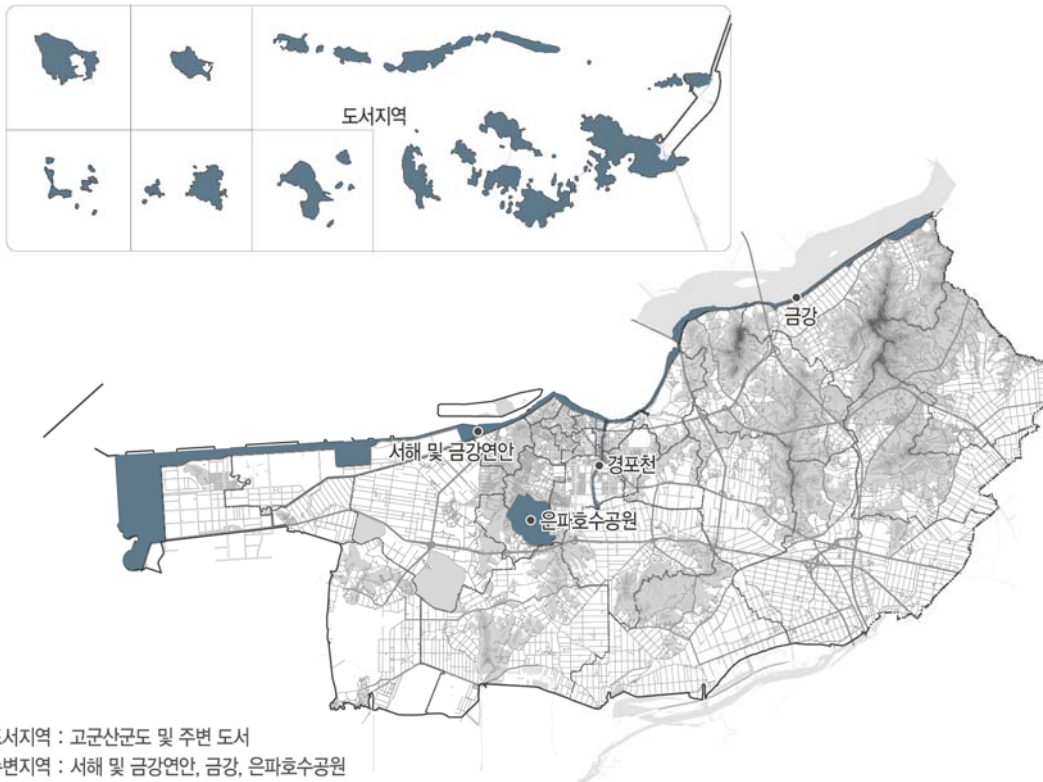
- 수변경관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량경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수변경관 연출
- 수변으로의 조망관리 및 건축물 관리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1. 계획의 개요

1.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도시지역 및 수변경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 수변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향 및 목표 설정

도시지역 및 수변경관 향상을 위한 보전·관리방안 제시

- 도시지역 및 수변 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
- 경관형성을 통한 도시지역 및 수변지역의 장소가치 향상 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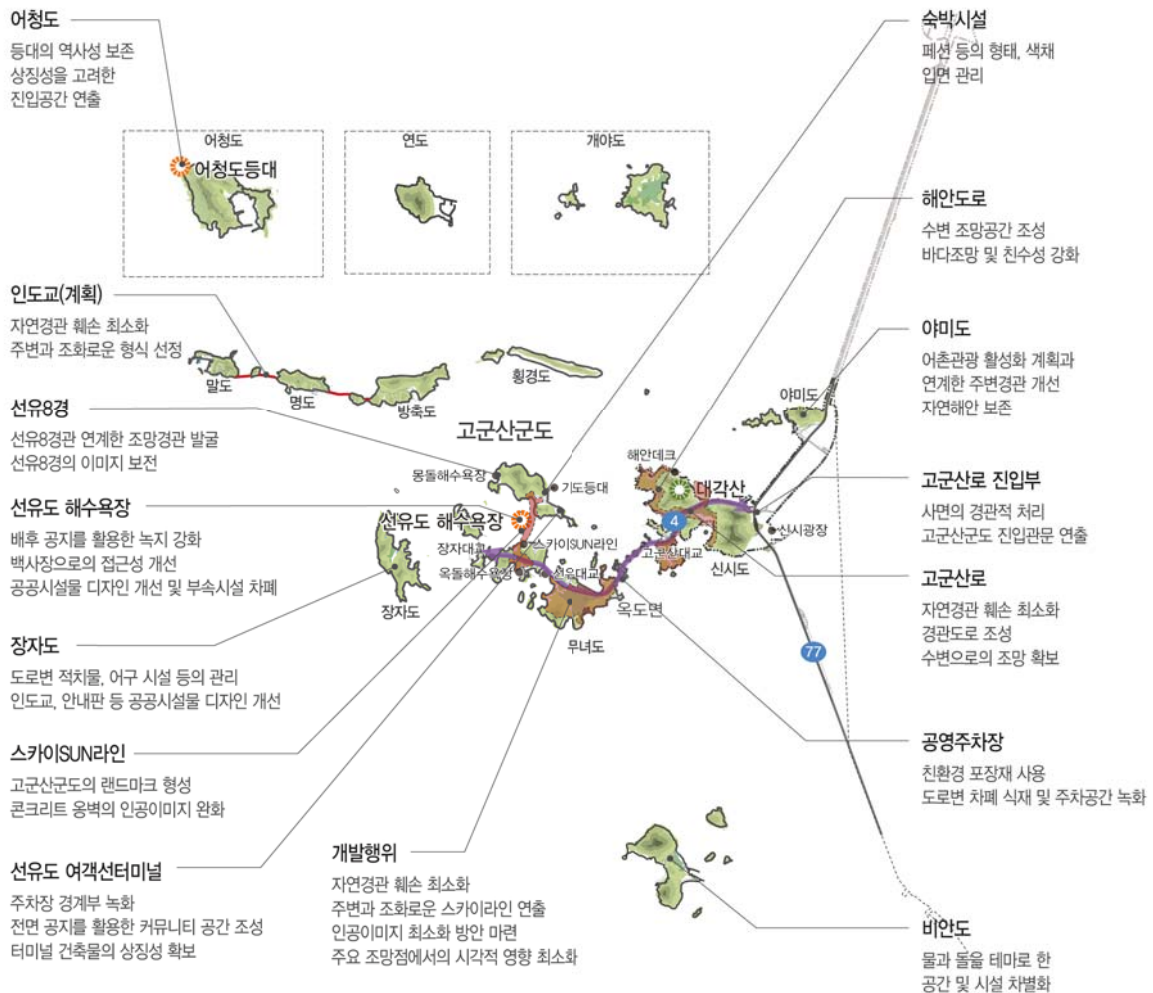
2. 도서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2.1 도서지역

1 기본방향

연안 및 섬이 어우러진 문화관광거점 연출

| | | | |
|------|--------------------|-----------|-------------------------|
| 연출방향 | 섬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공간 연출 | 보전 | 자연경관 및 바다로의 조망경관 보전 |
| 적용범위 | 옥도면 도서지역 | 관리 | 산지 및 해상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지 관리 |
| 적용대상 | 취락지, 항구, 구조물 등 | 형성 | 주요 항구 및 항만의 특화경관 형성 |



| | | | | | | |
|-----------|-------------|-----------|----------|----------|--------|------------|
| 범례 | ←→ 녹지경관축 | ←→ 수변경관축 | ←→ 도로경관축 | ←→ 문화경관축 | ● 산맥 | ■ 하천 및 저수지 |
| | ● 녹지경관거점 | ● 수변경관거점 | ● 역사문화거점 | ● 관문경관거점 | ● 주요시설 | |
| | ■ 도서내 새만금지역 | — 인도교(계획) | | | | |

2. 도시지역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2.1 도시지역

자연생태

해안의 지형특성 및 생태환경 보전

- 사구해안, 암초 해안, 몽돌 해안 등 해안선 및 지형 특성 보전
- 해안선의 부문별한 변형이나 훼손을 최소화
- 고유한 동·식물상과 생태적 다양성 보존
- 해안변 주변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자연지형의 보존

- 산지·구릉지의 지형 흐름을 보존 및 관리
-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나 자연지형을 보전하는 개발 유도
- 경작지의 수평적 경관특성 및 다랭이 논 등의 지형 특성 보존



양호한 수림대 및 경관자원 보전

- 해안림, 식생군락 등의 수림대 보전 및 해안 녹지대의 훼손 규제
- 임상 또는 식생이 뛰어난 경관, 습지 등에 대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
- 기존 식생의 보존 및 정비를 통한 푸르름이 있는 섬 조성
- 양호한 수림대 주변 연접부 경관 정비



선유팔경과 연계한 주요 조망경관 보호

- 선유팔경과 연계한 조망경관 발굴
- 원경요소로서 선유팔경의 이미지 보전
- 선유팔경과 연계한 조망점 형성 및 조망경관 관리



해안 및 산림의 조망경관 정비

- 산림, 구릉지 지형의 5부 능선 조망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설정
- 도로축, 녹지축과 연계하여 바다로 열린 시각통로 확보
- 해안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규제를 통하여 바다로의 시야를 확보
- 자연경관 조망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망시설 배치



생태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

- 갯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억새, 모감주나무 군락지 정비 및 특화
- 어촌 테마마을 조성을 통한 가치 창출
- 몽돌해수욕장 등 해안경관 자원과 연계한 테마공간 조성



2. 도시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2.1 도시지역

역사문화

해수욕장 경관의 보존 및 활용

- 해수욕장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 해수욕장 배후부지 식재를 통한 녹지축 조성
- 수변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재료 관리
- 파라솔 등의 임시시설물 관리로 쾌적성 확보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성 보존

- 문화재 등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를 통한 정체성 확보
- 역사문화자원과 일체감 있는 건축물 관리
- 공공시설물은 역사문화자원의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역사문화자원의 진입부 관리

- 역사문화자원 주변 위해시설 정비
- 역사문화자원의 경계부는 이질감이 없도록 녹지공간 조성
-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및 안내시설 정비로 시인성 확보
- 역사자원과 조화로운 포장 정비로 진입 유도



주요 조망점 관리 및 정비

- 항로상에서 주로 조망되는 결절부에 상징적 요소 도입
- 선착장 주변 특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
- 양호한 조망경관 보전을 위한 조망점 관리
- 대각산 등 조망 우수지역의 조망점 정비



랜드마크 등의 조망경관 관리

- 자연재료 사용 및 콘크리트 등의 인공이미지 최소화
-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구조물 색채관리
- 랜드마크 시설의 조망을 위한 조망점 발굴 및 관광자원 활용



2. 도시지역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2.1 도시지역

생활문화

취락지 경관 향상 및 건축물 관리

- 취락지구 내 주요 시설의 경관을 보호
- 바다와 어우러진 친환경 취락경관을 유도
- 취락지 스카이라인 관리
- 취락지 건축물 및 어구 등의 적치물 관리



섬의 정체성을 고려한 취락지 정비

- 섬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테마 부여
- 돌담길 정비를 통한 인상적인 골목길 조성
- 전통마을 구조의 복원 및 낙후 건축물, 폐가 등의 정비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돌담형식이나 자연소재를 활용



무분별한 개발행위 관리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 및 주변과 조화로운 규모 설정
- 자연경관 훼손 및 인공이미지 최소화 방안 마련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각적 영향 최소화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관리

- 섬을 대표하는 색채 선정으로 섬의 색채 정체성 정립
-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위한 일관된 색채를 연출하되 획일적 색채 지양
- 주변 자연경관 및 해양경관과 어우러지는 색채경관



마을 주변 경작경관의 보전

-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되는 경작지 및 염전의 원풍경 보전
- 특화작물의 재배를 통한 이색적인 경작지 풍경 연출
- 창고 등의 생산 및 가공시설은 자연재료 등으로 정비



2. 도서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2.1 도서지역

생활문화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

- 획일적 이미지 탈피, 경관성 고려
- 경계부 담장 제거 및 공공성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대상 섬 지역의 독특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유도
- 해안경관으로의 조망을 확보한 건축물 배치 계획



공공건축물의 친환경성 확보

- 친환경 소재 활용, 유니버설 디자인
- 전면공지에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휴식, 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자연소재 및 친환경적인 재료의 도입으로 섬 경관의 자연경관과 조화
- 다양한 형태의 풍부한 녹지 및 해안 공간 조성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도서경관 형성

- 섬별 테마를 고려한 자연소재의 옥외광고물
- 해안변 건축선 이격 및 저층 배치를 통한 조망 확보
- 경사지붕 및 지붕색채의 통일된 색채로 지역이미지 형성
- 해안변 보행 쾌적성 및 수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체계 구축



주거건축물 관리

- 주택경관 요소의 연속성, 일체감 있는 주거지 경관 형성
- 저층형의 경사형 지붕 형태를 권장하며 입면 녹화
- 건축물 외장재는 섬 고유의 재료 및 친환경 자연소재의 사용
- 도로변에서 부지경계 1m 이상 건축선 확보, 주차장은 외부 노출을 지양



활력이 넘치는 상업지역 경관정비

- 건축선의 후퇴와 건축지정선의 일체화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
- 경쾌하고 활기찬 이미지의 상업건축물 색채관리
- 지역적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심미성 및 통일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함
- 산악, 구릉지 등과 조화되며 리듬감 있는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형성



숙박건축물 관리

- 건축물의 형태는 통일성 및 규칙성을 주어 경관의 혼잡성을 완화
- 숙박용 건축물은 해안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 숙박용 건축물은 과도한 형태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성 고려



2. 도서지역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2.1 도서지역

공공공간

섬 정체성을 고려한 문화공간 형성

-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폐건축물 및 여유공지를 활용한 섬 문화공간 확보
- 방파제, 호안 등을 활용한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경관요소 및 섬 조망경관 발굴

- 고유의 역사문화, 자연자원과 연계한 경관요소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 섬의 고지대나 주요 결절부를 이용하여 주요 자원으로서의 조망점을 형성
- 도서별 경관브랜드 계획 수립



구조물 및 시설물을 활용한 특화경관 형성

- 항만시설, 등대, 교량 등의 특화를 통한 상징경관 연출
- 도서별 결절부에 특색 있는 시설물 및 야간경관으로 상징성 부여
- 특색 있는 항만 시설을 활용한 정체성 확보
- 등대와 연계한 산책로 정비 및 조망 명소화



선착장 및 주변부 관리

- 섬 진출입을 고려한 상징적 요소 도입으로 진입경관 연출
- 섬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소로 선착장 주변 정비
- 과도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지양하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장소 연출



가로변 위해시설 관리

- 가로에서 조망되는 위해시설 제거 및 차폐
- 창고 등의 경관저해 요소는 녹지로 차폐하거나 디자인요소로 활용
- 어구, 적치물 등은 도로에서 이격하여 배치
- 공공공간에서 위해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관리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이용객 및 거주민의 쉼터 공간 확보
- 공동작업장 기능의 광장 조성을 통한 어촌풍경 연출
- 섬 주민과 관광객의 소통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2. 도시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2.1 도시지역

공공공간

도로축 경관관리

-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되는 자연적인 선형 확보
- 옹벽, 사면,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친환경성 및 미관성 확보
- 도로변 위해시설(임시시설, 창고, 폐가 등)의 차폐 및 녹화
- 도로변 건축물은 섬의 특색을 고려한 입면 및 색채 정비



경관도로 조성

- 도로 주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의 조망 확보
- 자연경관 조망이 우수한 도로 결절부에 휴식 및 조망공간 조성
- 도로변 녹지공간 확보 및 대표수종 식재를 통한 상징성 확보
- 초화류 식재 및 다양한 배식 기법을 통한 녹지의 연속성 확보



섬 정체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은 섬별 테마를 설정하여 특화가 가능
-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섬 경관과 조화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간판만 허용



해안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관리

- 내구성 있는 재료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
-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일체감 있는 이미지 부여
- 수변 조망을 고려한 개방감 있는 형태
- 시설물 재료는 무광 처리를 통한 주변과 조화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주변 지형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연출
- 인접 구조물과 위계를 고려한 형식 및 규모 설정
- 과도한 조형적 디자인을 지양하고, 간결하며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
- 경관분석을 통한 순응 및 강조에 따른 구조물의 색채계획



불법 및 위반 건축물 관리

- 상업행위를 위한 가건물, 임시시설물 관리
-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자전거, 스쿠터 등의 시설물 관리
- 해안변 조립식 건축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경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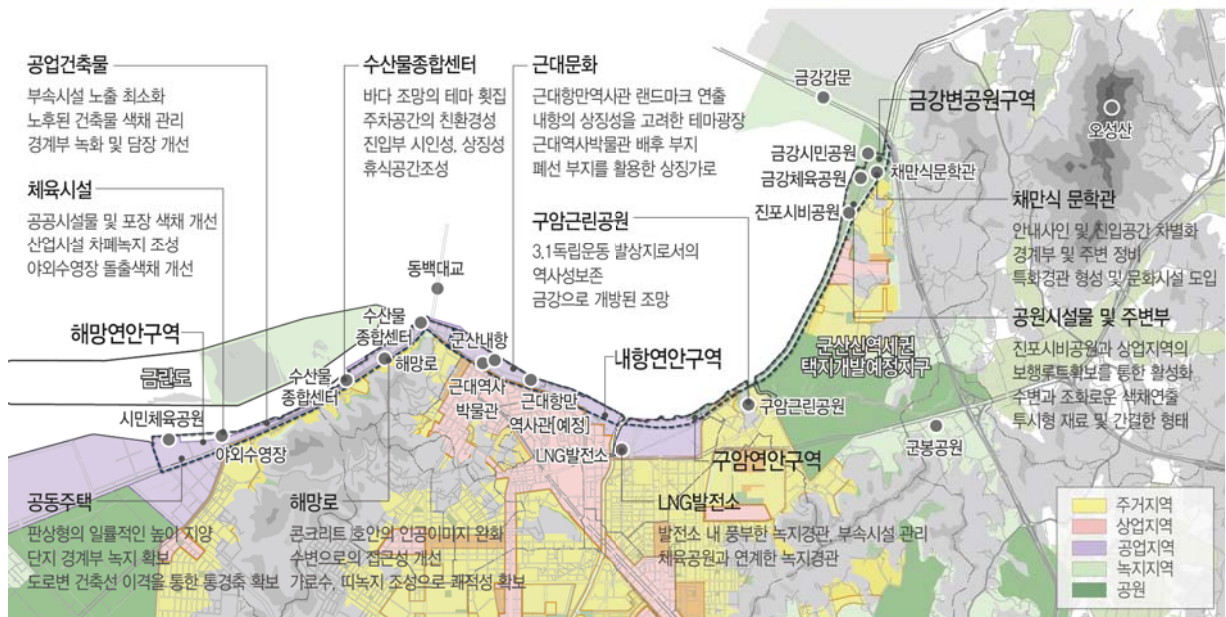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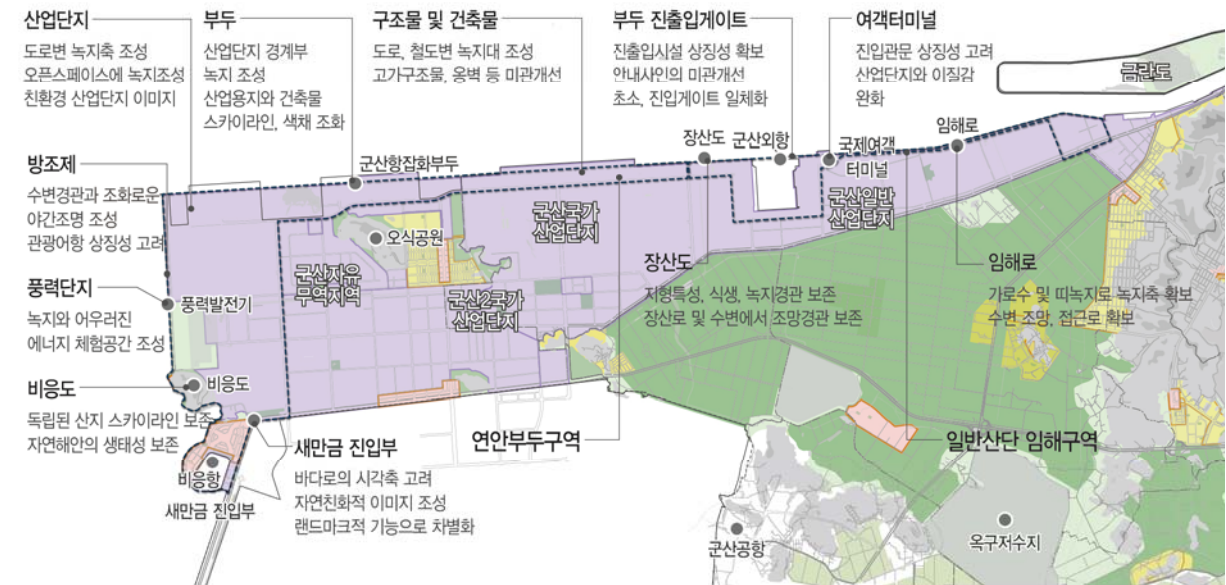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1 기본방향

서해 및 연안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수변경관 형성

- 연출방향 수변으로의 접근성 및 쾌적성 확보 **보전** 자연경관 및 수변으로의 조망 보존
- 적용범위 서해 연안, 금강 연안 **관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및 외관 관리
- 적용대상 항구,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등 **형성** 수변의 쾌적성 및 친수공간 형성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연안부두구역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 내륙에서 바다 방향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
- 동선의 결절부 랜드마크 조성으로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연출
- 해안변 건축물 저층배치 및 사선배치를 통한 개방감 확보



개방감을 고려한 열린 시각축 조성

- 내부의 공원을 중심으로 열린 시각 통로 확보
- 주요 가로에서 서해 바다로의 열린 시각축 조성
- 바다로의 열린 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축 조성

- 보행자 도로 및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축 형성
- 보행자도로변 시각축 조성을 통한 근린광장으로의 동선 유도
-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통한 상징가로 조성



가로의 연속성 및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중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3m 건축한계선 지정
- 비응항 서측 호안변 3m 건축지정선, 6m 벽면지정선 지정
- 건축물의 일관성 있는 배치 및 전면부 녹화를 통한 연속성 확보



옥외광고물은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

- 가로형 간판은 2층 이내에 설치 가능하며 2층은 입체형을 원칙으로 함
-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간판, 옥상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을 금함
- 인접 건축물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높이 통일



방조제와 연계한 야간조명계획 수립

-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방조제와 연계한 야간조명계획을 마련
- 현란한 빛의 사용을 지양하고 건축물의 조형미를 고려한 조명계획
- 관광어항의 상징성을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차별화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연안부두구역

개방감 및 녹음이 풍부한 근린광장 조성

- 근린광장으로 낮아지는 건축물 배치로 개방감 확보
-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와 연계한 녹음광장 조성
- 이용객의 편의 및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연 및 녹지경관 보존 및 활용

- 비응도 등 독립된 산지의 스카이라인 보존
-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의 보존 및 연계
- 비응도 자연해안의 선형 및 생태성 보존
- 녹지 및 풍력단지와 어우러진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새만금 진입부 진입경관 연출

- 새만금 진입부에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조성을 통한 진입경관 연출
-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건조물의 정비를 통한 상징성 부여
- 새만금북로에서 바다로의 시각축을 고려한 배치계획
- 랜드마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 건물과 차별화 되도록 계획



금강연안 부두의 경관관리

- 부두 내 구조물의 시각적 차폐 및 색채 개선
- 수직적 구조물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조형화
- 산업단지 경계부 녹지 조성을 통한 이질감 완화
- 새만금 산업용지와 스카이라인 및 건축물의 형태, 색채의 조화



친환경 산업단지 이미지 강화

- 가로수,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주요 도로변 녹지축 조성
- 도로변과 산업단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녹지 거점 조성
- 담장의 이격을 통한 후퇴부 녹지공간 조성



도로변 구조물 및 건축물 관리

- 도로와 철도변 녹지대 조성 및 고가 구조물의 경관관리
- 공업건축물 입면 및 색채 관리를 통한 시각적 완화
- 옹벽, 방음벽 등 도로구조물의 미관 개선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일반산단 침해구역

부두의 진출입게이트 상징화

- 군산시의 정체성을 고려한 진출입시설의 상징성 확보
- 부두 진출입부 안내사인의 미관개선
- 초소는 진입게이트와 일체화하여 조형성 확보



옹벽 및 방음벽 미관개선

- 옹벽의 발생 최소화방안 마련
- 방음벽 입면 녹화를 통한 녹시율 증대
- 방음벽의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색채 개선



여객터미널 및 주변부 관리

- 여객터미널의 진입부 차별화 및 상징성 확보
- 진입관문으로서 상징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개선
- 산업단지 경계부와 이질감 완화를 위한 차폐식재



임해로

-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축 확보
- 바다로의 조망경관 보존 및 수직시설물 지양
- 수변으로의 접근로 확보 및 친수시설 도입



산업시설 관리

- 노후화된 건축물 외관 개선
- 크레인 등 구조물의 색채 관리
- 규모가 큰 건축물의 분동 및 분절
- 도로 상부 통과구조물의 미관개선



자연경관 보존

- 장산도의 지형특성 보존
- 장산도 식생 및 녹지경관 보존
- 장산로 및 수변에서의 조망경관 보존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해망연안구역

공동주택 경관관리

- 판상형의 일률적인 높이 지양
- 근생시설의 옥외광고물 관리
- 단지 경계부 녹지 확보 및 방음벽 미관 개선
- 단지 내부도로변 건축선 이격을 통한 통경축 확보



공업건축물 경관관리

- 공업건축물 부속시설 노출 최소화 및 건축물과 일체화
- 노후화된 건축물 입면 및 지붕 색채 관리
- 옥탑부 부속시설의 돌출색채 관리 및 노출 최소화
- 삭막한 경계부 녹화 및 담장 개선



수변의 친수성 및 다양성 창출

- 연안 경계부 콘크리트 호안의 인공이미지 완화
- 해망로에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 수변부 조망 및 친수시설 도입
- 직선적인 호안에 변화감 부여



연안공간의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 연출

- 금강연안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조명 연출
- 동백대교 야간경관과 연계한 조명 연출
- 빛의 위계를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
- 연안의 특색 및 활성화를 고려한 은은한 조명 연출



연안변 상업건축물 관리

- 동백대교에서 조망되는 건축물 입면 및 지붕 관리
- 노후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물의 일체감 있는 입면 형성
- 전면부 위해시설 및 적치물 관리
- 상업시설은 4면의 재료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



소룡동 체육시설 관리

- 시민체육공원 공공시설물 및 포장 색채 개선
- 체육공원 경계부 산업시설 차폐녹지 조성
- 소룡동 야외수영장 돌출색채 개선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해망연안구역

해망로 및 주요가로경관 개선

-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을 통한 쾌적성 확보
- 가로변 콘테이너 박스 및 어구 등의 가시설 차폐
- 가로변 노후 건축물의 입면 및 색채 개선



금강연안으로의 개방 경관 형성

- 해망로에서 연안변으로의 수변조망축 조성
- 건축물 직각 배치를 통한 개방감 확보
- 조망축선상의 건축물 배치 지양



수산물종합센터 및 횃집단지 개선

- 바다 조망이 가능한 테마 횃집 조성
- 주차공간의 친환경성 확보
- 수산물종합센터 진입부 시인성 및 상징성 확보
- 유희부지를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



옥외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의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
- 수산물시장의 테마를 부여한 돌출간판
- 옥외광고물은 최소한의 크기 및 입체형 권장



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

- 주차장 캐노피는 간결한 형태
- 동백대교의 하부 색채 관리
- 수변부 안전난간은 간결한 형태 및 저채도 단색 적용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내항연안구역

이야기가 있는 도심재생 거점 마련

- 폐선 활용 및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 여유공지, 빈 건물을 활용한 친환경 예술문화 거점공간 조성
- 수변 산책로 및 친수공간 정비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상징공간 연출

- 근대항만역사관은 근대문화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연출
- 근대역사박물관 배후 부지 및 폐선 부지를 활용한 상징가로 조성
- 근대항만역사관 전면부 내항의 상징성을 고려한 테마광장 조성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도입을 통한 친수성 강화

- 금강연안변 여유부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 진입동선 결절부에 수변조망이 가능한 친수시설 도입
- 내항의 거점공간과 연계한 수변보행로 확보



금강해수랜드 주변 경관 개선

- 노후 건축물의 외관 및 태양광시설의 일체화
- 서래고가교 하부 옹벽의 인공이미지 완화
- 강변로 및 서래교에서의 부감조망을 고려한 건축물 정비
- 친환경 주차공간 조성 및 경계부 녹화



근대역사문화지구와 연계성 확보

- 공공시설물은 갈색 적용으로 근대역사자원과 연계
- 근대역사자원과 어울리는 경관 조성
- 근대역사자원의 예술문화자원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옥외광고물의 관리

- 옥외광고물은 최소한의 크기로 하고 자연소재 사용
- 옥외광고물은 저채도 저명도 색 적용
- 1개 업소당 1개 설치로 쾌적한 가로 조성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1 서해 및 금강연안

구암연안구역 및 금강변 공원구역

LNG발전소 주변 경관관리

- 발전소 내 풍부한 녹지경관 보존
- 강변로에서 조망되는 LNG발전소 건축물의 부속시설 관리
- LNG발전소 체육공원과 연계한 녹지경관 강화



강변로에서의 조망경관 관리

- 구암산으로의 조망 보존
- 강변로에서 연안으로의 조망경관 보존
- 도로변 산재되어 있는 주유소 등의 상업건축물 관리
- 강변로변 건축선 이격 및 저층배치를 통한 개방감 확보



공원시설물 및 주변부 관리

- 진포시비공원과 상업지역의 보행루트 확보를 통한 활성화
- 공원 시설물은 수변과 조화로운 색채 연출
- 수변 조망을 고려한 투시형 재료 및 자연소재 사용
- 직접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 적용



채만식 문학관의 인지성 강화

- 안내사인 및 진입공간 차별화로 진입부 시인성 확보
- 경계부 및 주변 정비를 통한 상징성 확보
- 주변 녹지대를 활용한 특화경관 형성 및 문화시설 도입



구암역사공원의 역사적 이미지 관리

- 군산지역 3.1독립운동 발상지로서의 역사성 보존
- 북측 금강으로 개방된 양질의 조망경관 보유



공원 및 도로 구조물 경관관리

- 입체교차로 구조물의 색채 및 실사그래픽 경관관리
- 금강호 휴게소와 연결되는 지하통로 경관관리
- 체육시설 주변 임시구조물의 형태 및 색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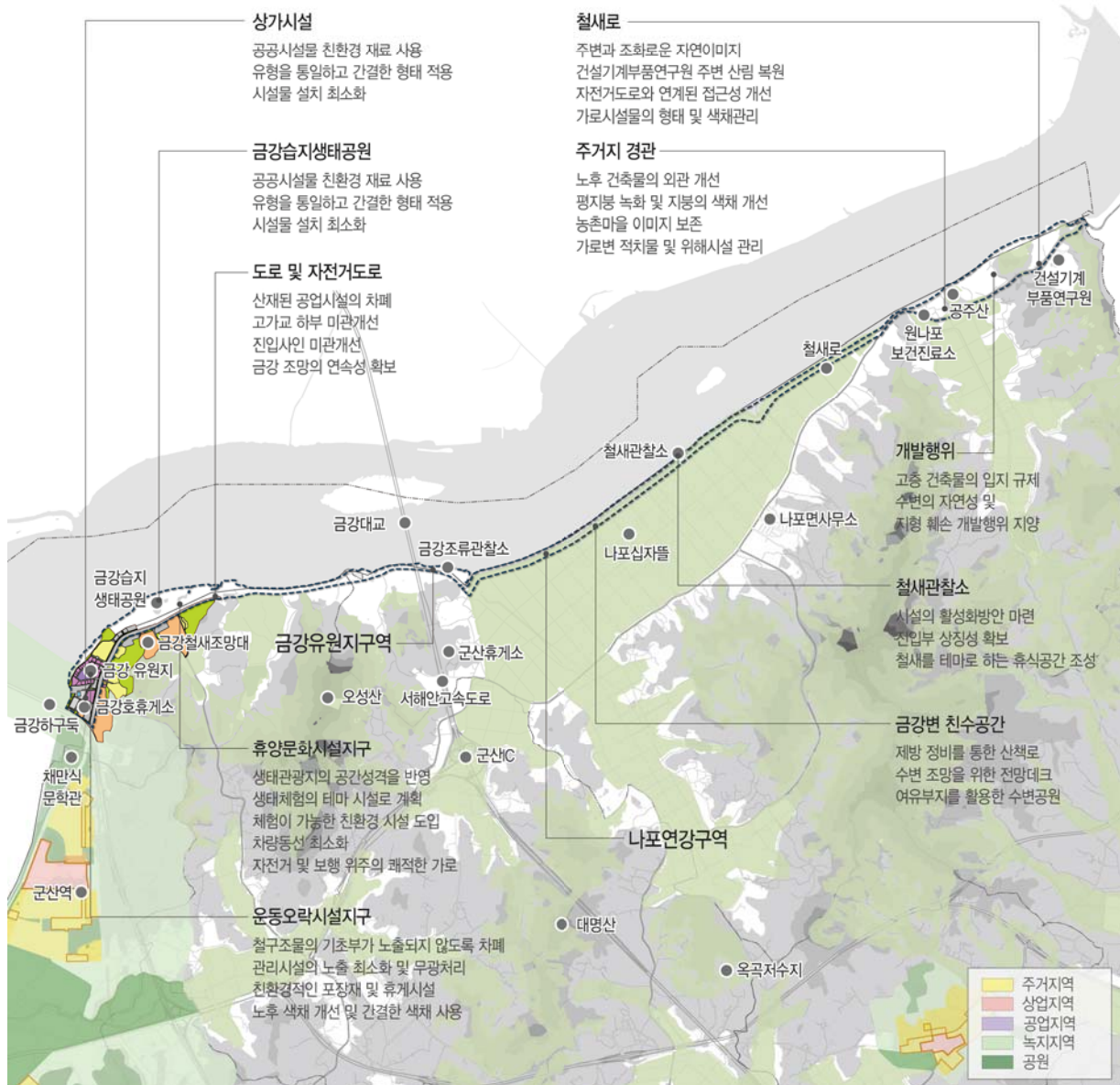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2 금강

기본방향

친환경 관광지 조성 및 전원이미지 강화

- 연출방향 생태자원과 어우러진 특화경관 연출
 - 적용범위 금강유원지 구역 및 나포십자들
 - 적용대상 건축물, 공원, 관광지 등
- | | |
|-----------|----------------------|
| 보전 | 수변 생태계 및 철새도래지 보존 |
| 관리 | 유원지 시설지구 및 주거지 경관관리 |
| 형성 | 철새를 테마로 하는 생태관광거점 형성 |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2 금강

■ 금강유원지구역

천혜의 경관자원의 보존

- 가창오리의 중간기착지로서 중요한 철새도래지 보존
- 수변 및 주변 녹지로의 조망경관 보존
- 금강 수변 녹지축 및 오성산으로부터 유입되는 녹지축 보존



환경자원의 가치화를 통한 생태관광 거점화

- 금강호의 생태계와 철새서식지의 보호를 통한 환경자산의 가치화 도모
- 생태탐방루트의 정비 및 개발을 통한 철새 탐조이용객의 이용성 확보
- 생태적 한계수용능력(EPCC)내에서의 수용 및 사계절 탐조 프로그램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계획

- 신축건물은 넓은 면적에 원색이나 강한 색상이 채색되지 않도록 유도
- 신축건물은 아늑하고 편안한 색조 사용 및 유사색에 의한 색상변화
- 재료 자체로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에는 명도 4이하, 채도 60이상은 제한



친환경 관광지 개발 유도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 녹지축의 단절에 따른 녹지축 확보
- 사업지구 내부의 조망축 및 통경축 설정



도로 및 자전거도로로 경관 관리

- 철사로 주변 산재된 공업시설의 차폐
-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교의 하부 미관개선
- 서해안 고속도로 군경계부 투박한 진입사인 미관 개선
- 자전거도로에서 금강 조망의 연속성 확보



금강습지생태공원의 경관관리

- 공공시설물은 인공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재료 사용
- 공공시설물은 유형을 통일하고 간결한 형태 적용
- 수변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수변의 생태성 보존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2 금강

■ 금강유원지구역

공공편익시설

- 광장은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 사용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차공간은 진출입을 구분하고 친환경 경계부 및 녹지공간 확보
-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는 형식으로 하고 특색 있는 외관 연출



금강호 관광지 내 상가시설 관리

- 건축물 저층배치 및 금강변 차폐수림대 조성
- 수변부 파라솔 등의 임시시설물 배제로 쾌적성 확보
- 광고물은 자연소재 사용으로 수변과 조화
- 건축선 이격 및 후퇴부에는 보행로, 조경 및 휴게를 위한 시설설치



운동오락시설지구

- 기계 유희시설은 철구조물의 기초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기계 유희시설 관리시설의 노출 최소화 및 무광 처리
- 친환경적인 포장재 사용 및 녹음이 풍부한 휴게시설 설치
- 노후 색채 개선 및 간결한 색채 사용으로 정돈된 공간 구현



휴양문화시설지구

- 생태관광지의 공간성격을 반영하여 생태체험의 테마 시설로 계획
- 단지의 특색과 테마를 구현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시설도입
- 차량 동선을 최소화하고 자전거 및 보행 위주의 쾌적한 가로 연출



녹지 및 기타 시설

- 녹지 공간은 원형녹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계획
- 숲속산책로 및 체력단련시설 등과 연계하고 자연적인 분위기 조성
- 기존 경작지를 보존하여 생태체험공간으로 활용
- 철탑은 저채도의 단색을 적용하여 배경요소로 관리



도로 및 가로

- 주 진입, 순환, 보행 및 자전거도로, 숲 산책로 등의 위계를 설정
- 도로는 자연지형 및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지세에 순응하는 선형으로 계획
- 보행동선은 수려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산림 및 농지와 연계
- 녹지축 조성을 통한 가로의 쾌적성 및 연속성 확보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2 금강

나포연강구역

금강변 친수공간 확보

- 제방 정비를 통한 산책로 확보
- 수변 조망을 위한 전망데크 조성
- 여유부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철새로 경관관리

- 주변과 조화로운 자연 이미지 강화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변 훼손된 산림 복원
- 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관리
- 철새로에서 금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접근성 개선



자연경관 보존

- 공주산 및 주변 구릉지 보존 및 훼손지 복원
- 철새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금강으로의 조망경관 보존
- 하천과 어우러진 전원경관 보존



철새관찰소 주변경관 관리

- 철새관찰소 시설의 활성화방안 마련
- 철새관찰소 진입부 상징성 확보
- 진입부 철새를 테마로 하는 휴식공간 조성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주거지 경관

- 노후 건축물의 외관 개선
- 평지붕 녹화 및 지붕의 돌출색채 개선
- 농촌마을의 이미지 보존
- 취락지 가로변 적치물 및 위해시설 관리



개발행위 규제

- 고층 건축물의 입지 규제
- 수변의 자연성 및 지형을 훼손하는 개발행위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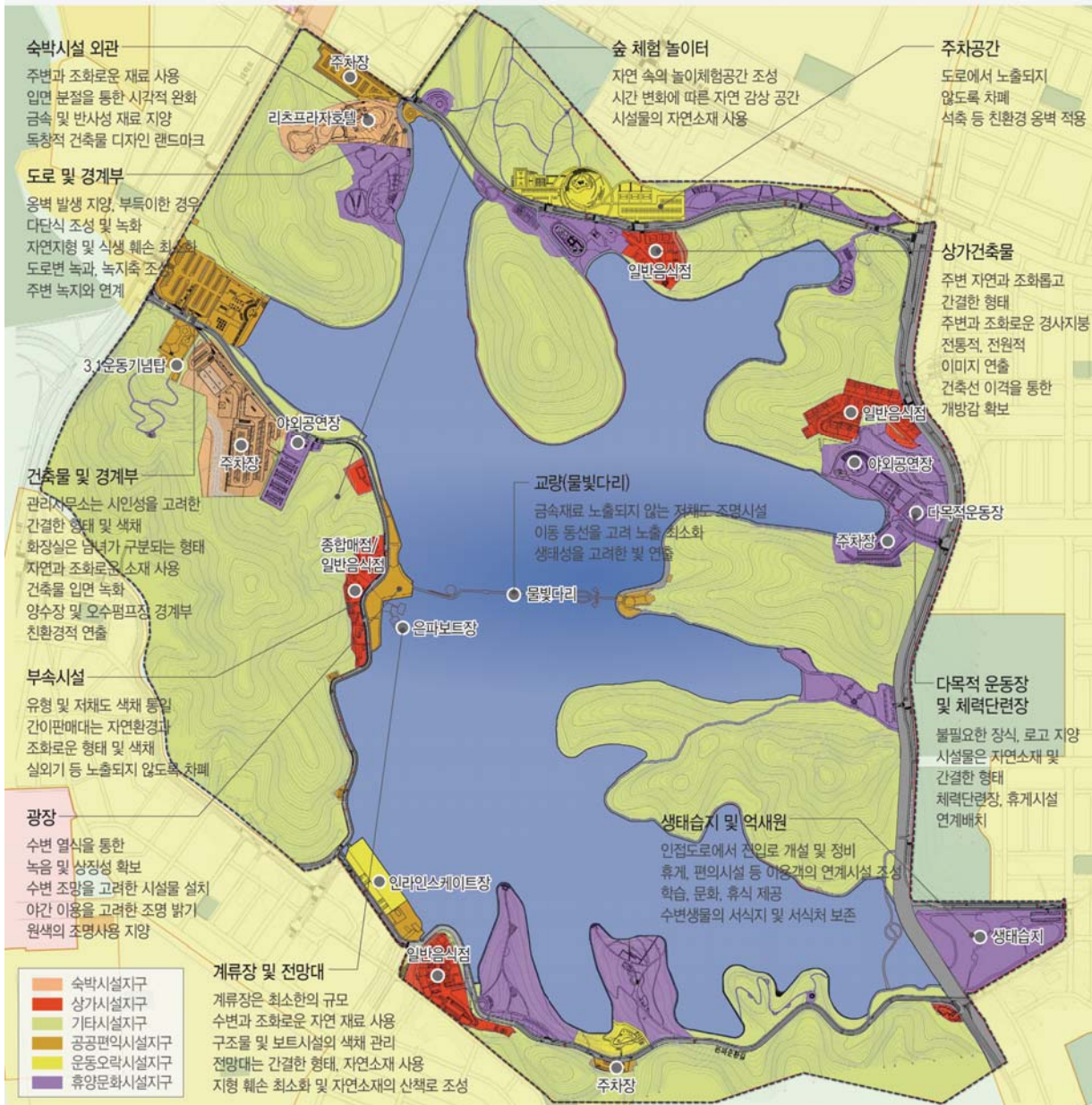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기본방향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문화체험 거점 조성

- 연출방향 자연,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 조성 **보전** 녹지 및 수변의 생태성 보존
- 적용범위 은파유원지 구역 **관리** 건축물 및 구조물 관리
- 적용대상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등 **형성**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 형성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공공편익시설

건축물 및 경계부 관리

- 관리사무소는 시인성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 및 색채 적용
-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되는 형태 및 자연과 조화로운 소재 사용
- 건축물의 입면 녹화를 통한 자연경관과 동화
- 양수장 및 오수펌프장 경계부는 친환경적으로 연출



친환경 주차장

- 주차장은 잔디 블록 등의 친환경 포장재 적용
- 외부에서 주차장 내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부 녹화
- 주차장 내 위치 인식을 고려한 안내체계 마련



광장

- 광장부 수변으로의 열식을 통한 녹음 및 상징성 확보
- 경계부 불법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양하여 쾌적한 수변공간 연출
- 수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원색의 조명사용을 지양하고 야간 이용을 고려한 충분한 밝기 확보



구조물 및 시설물

- 야외무대, 캐노피 등의 구조물은 간결한 형태 및 색채 연출
- 공공시설물은 유형을 통일하고 생태적인 이미지로 연출
- 돌출색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색 사용 권장



도로 및 진입부 관리

- 주요 진입부 진출입공간으로서의 장소성 확보
- 순환도로변 녹지 및 수변과 어우러진 경관도로 이미지 강화
- 도로는 계절감을 고려한 수목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가로 형성
- 도로변 녹화 및 위해시설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로 연출



교량(물빛다리)

- 조명시설은 저채도 색채 및 금속재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조명시설 등의 금속재료는 이동 동선을 고려한 설치로 노출 최소화
- 야간조명은 수변의 생태성을 고려한 빛 연출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숙박시설

경관

- 인공이미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각적으로 쾌적한 이미지 형성
- 건축물 내 층고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연출
- 건축물의 돌출 및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지양
- 옥상녹화 및 상층부 전망공간 조성을 통한 수변조망 확보



도로 및 경계부

- 옹벽 발생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단식 조성 및 녹화
- 자연지형 및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
- 도로변 녹화를 통한 녹지축 조성 및 녹시율 향상



외관

- 주변과 조화로운 재료 및 재료간 이질감이 없는 재료 사용
- 색채, 돌출 및 후퇴에 의한 입면 분절을 통한 시각적 완화
- 금속재료 및 반사성 재료의 사용 지양
- 독창적인 건축물 계획으로 랜드마크 형성



배치

- 도로 및 수변에서 이격 배치하여 위압감 완화
- 도로변 저층배치를 통한 개방감 확보
- 주변 자연경관으로의 조망이 확보되는 건축물 배치
- 숙박시설은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

- 진입부 경관식재를 통한 시인성 확보
- 안내사인인 통합디자인을 통한 일관성 확보
- 녹지는 기존 식생과 조화로운 수종 및 계절감 부여
- 친환경 포장재 및 간결한 형태의 공공시설물 적용



주차공간

- 도로에서 주차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콘크리트 형식의 옹벽을 지양하고 석축 등의 친환경 공법 적용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Ⅰ 운동오락시설 및 기타시설

숲 체험 놀이터

- 숲체험장과 연계한 자연 속의 놀이체험공간 조성
-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 제공
- 놀이시설은 자연소재를 사용하고 휴게시설은 숲 체험장과 유형을 통일



다목적 운동장 및 체력단련장

- 공공시설물, 안내시설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로고 등의 지양
- 다목적 운동장 내 공공시설물은 자연소재 사용 및 간결한 형태로 연출
- 체력단련장은 휴게시설과 연계배치하고 형태, 색채의 조화
- 체력단련장의 운동시설은 자연소재 사용



커뮤니티 회랑

- 커뮤니티회랑 내 판매시설은 형태, 규모, 색채를 통일하여 일관성 확보
- 커뮤니티 회랑 내 건축물, 시설물은 주변 녹지와 이질감이 없는 재료 사용
- 공동주택단지와 경계부는 완충식재를 통한 시각적 완화
- 웅벽 발생을 지양하고 지형훼손 최소화



녹지의 생태적 특성 보존

- 서측의 생태자연도 1등급 산림경관 및 양호한 수림대 보존
- 사업지 내 경사 및 지형의 적극 활용으로 훼손 및 변화 방지
- 주변 자연경관 및 기존 시설과 조화되는 규모의 개발



수변으로의 조망 보존

- 주요 도로 및 거점공간에서의 수변 조망 보존
- 수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건조물 배치



위해시설 및 임시시설 관리

- 시설지구와 인접한 묘지시설의 차폐
- 공사가림막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 적용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상가시설

건축물

- 상업건축물은 주변 자연과 조화롭고 간결한 형태로 연출
- 지붕은 주변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적용
- 외관은 전통적 이미지 또는 전원적 이미지로 연출
- 건축선 이격을 통한 개방감 확보



부속시설 관리

- 상업시설 내 파라솔 등의 부속시설물은 유형 및 저채도 색채로 통일
- 간이판매대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간결한 형태 및 색채 연출
- 실외기 등의 부속시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가로

- 가로변 커뮤니티를 고려한 공개공지 확보
- 가로변 녹화를 통한 녹지축 연계
- 보차도 구분을 통한 보행 쾌적성 확보
- 주요가로변 주차장 배치 지양



외부공간

- 충분한 녹지면적 확보를 통한 녹시율 향상
- 경계부 녹화를 통한 이질감 완화



색채

- 쾌적하고 활기 있는 이미지로 연출
- 자연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 조화 및 사용색 수 최소화
- 원색의 돌출색 사용을 지양하고 정돈된 색채 사용



옥외광고물

- 도로에서 노출되는 광고물은 간결한 형태의 입체형 권장
- 옥외광고물은 설치위치, 규모, 색채 등을 통일
- 옥외광고물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자연재료 사용
- 불법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광고물의 수량 최소화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3 은파호수공원

휴양문화시설

야외갤러리

- 갤러리는 수변 조망이 가능하며 공공미술을 가미한 건축물 형태
-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의 문화, 예술 콘텐츠가 있는 특화공간 조성
- 호텔과 연계한 동선을 확보하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 갤러리, 공원시설물, 휴게시설 등은 인공이미지 지양



계류장 및 전망대

- 계류장은 최소한의 규모 및 수변과 조화로운 자연 재료 사용
- 계류장 구조물 및 보트시설의 색채 관리
- 전망대는 간결하고 부드러운 형태 및 자연소재 적용
- 산책로 조성시 지형 훼손 최소화 및 침목 등의 자연소재 사용



야외공연장 및 자전거문화센터

- 야외공연장 구조물은 간결한 형태 및 무광처리
- 공연장 바닥포장은 주변 녹지와 어우러진 친환경 포장재 사용
- 자전거문화센터 옥상녹화 및 건축물 입면 녹화
- 금속 등의 반사성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입면 연출



숲체험관

- 다양한 높이의 지붕연출과 매스의 적절한 배치로 입체적인 입면계획
- 숲체험관은 외부공간의 테마를 반영한 건축물의 이미지 연출
- 체험시설 등 시설물은 친환경 재료 도입
- 안내사인은 외부공간의 테마를 반영한 소재 및 형태 적용



생태습지 및 역사원

- 인접도로에서 습지로의 진입로 개설 및 정비
-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이용자의 연계시설 조성
- 다양한 수변식물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학습, 문화, 휴식활동 제공
- 수변생물의 서식지 및 식물 서식처 보존



쉼터 및 휴게소

- 대상지내 전망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
- 녹음 및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과 주요 결절부 상징수목 식재
- 공공시설물은 수변으로의 조망이 확보되는 간결한 형태 및 자연재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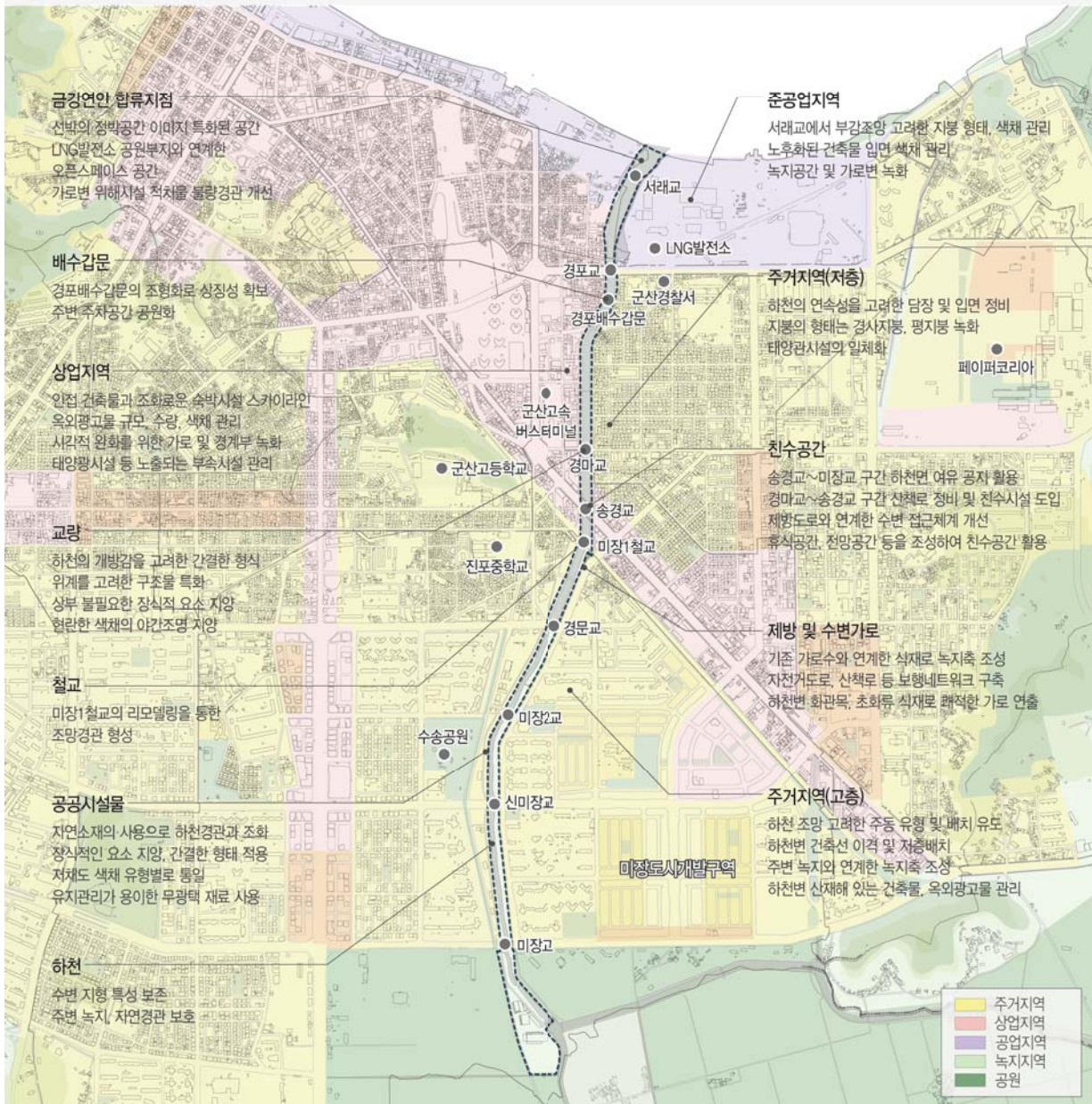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4 경포천

1 기본방향

하천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 및 친수공간 형성

- 연출방향 하천의 연속성 및 장소성 확보 **보전** 하천의 생태적 특성 및 연속성
- 적용범위 도시지역 내 하천구역으로부터 50m **관리** 상업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 관리
- 적용대상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등 **형성** 개방감을 고려한 친수공간 형성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 · 관리계획

3.4 경포천

■ 시가지구간

하천의 생태경관 보존

- 하천이 간직하고 있는 선형 및 수변 지형 특성 보존
- 하천과 하천 주변 녹지 및 자연경관의 보호
- 인공적인 정비를 지양하고 자연형 하천경관 유도
- 하천 고유의 자연적 이미지를 보호



교량 구조물 관리

- 하천의 개방감을 고려한 간결한 형식 선정
- 교량의 위계를 고려한 구조물 특화 및 야간경관계획
- 교량 상부에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
- 돌출색 및 현란한 색채의 야간조명 지양



배수갑문, 철교의 구조물 관리

- 경포배수갑문의 조형화를 통한 상징성 확보
- 갑문 주변 주차공간은 공원화를 통한 거점공간 확보
- 미장철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조망경관 형성



금강연안 합류지점 진입부 이미지 강화

- 선박의 정박공간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화된 공간으로 연출
- LNG발전소 공원부지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공간 조성
- 수변가로변 위해시설 및 적치물 정비
- 선박수리시설 및 건축물 정비로 불량경관 개선



준공업지역 경관관리

- 서래교에서의 부감조망을 고려한 공업건축물 지붕 형태 및 색채 관리
- 노후화된 건축물 입면 및 색채 관리
- 녹지공간 및 가로변 녹화를 통한 쾌적한 공간 연출
- 컨테이너 시설 및 가로변 적치물 차폐



상업지역 경관관리

- 인접 건축물과 조화로운 숙박시설의 스카이라인 관리
- 하천변 옥외광고물의 규모, 수량, 색채 관리
- 혼재된 주거 건축물의 시각적 완화를 위한 가로 및 경계부 녹화
- 태양광시설 및 실외기 등의 노출되는 부속시설 관리



3. 수변경관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3.4 경포천

시가지구간

주거지역(저층)

-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한 노후 건축물의 담장 및 건축물 입면 정비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평지붕은 녹화
- 태양광시설의 일체화



주거지역(고층)

- 하천으로의 조망을 고려한 주동 유형 및 배치 유도
- 하천변 건축선 이격 및 저층배치로 개방감 확보
- 주변 공원 및 녹지와 연계한 녹지축 조성
- 하천변 산재해 있는 근생 건축물의 규모 및 옥외광고물 관리



제방 및 수변가로

- 기존 제방 가로수와 연계한 가로수 식재로 녹지축 조성
-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보행네트워크 구축
- 가로변 화관목, 초화류 식재를 통한 쾌적한 수변가로 연출



공공시설물

- 자연소재의 공공시설물 연출로 하천경관과 조화
- 장식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하천 조망을 고려한 간결한 형태 적용
- 공공시설물은 유형별로 통일하고 저채도 색채 적용
-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고 눈부심이 발생하는 재료 지양



조망경관의 보존

- 양호한 수림대 및 주변 능선으로의 조망성을 보호함
- 경포천으로의 시각적 개방성 확보
- 수변으로의 조망 확보
- 수변조망을 차폐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 설치 지양



친수공간 조성

- 송경교~미장교 구간은 둔치 및 하천변 여유 공지를 활용
- 경마교~송경교 구간은 수변산책로 정비 및 친수시설 도입
- 제방도로와 연계한 수변 접근체계 개선
- 휴식공간, 전망공간 등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성 제고



경관협정 매뉴얼



1. 경관협정의 개요

1.1 경관협정이란

경관협정의 정의

- 경관협정은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경관협정의 규정

- 경관협정과 관련된 법적규정은 경관법(제19조에서 제25조) 및 경관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제17조)에 명시
- 경관법에서는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제24조(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에 각각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관법 시행령에서는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13조(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제15조(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각각의 규정을 두고 있음

경관협정의 특징

경관협정의 효과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될 것으로 기대

경관협정의 효력

-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한정하고, 협정내용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협정서에 수록

경관협정의 체결

- 경관협정의 체결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담부서와 경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에 의해 승인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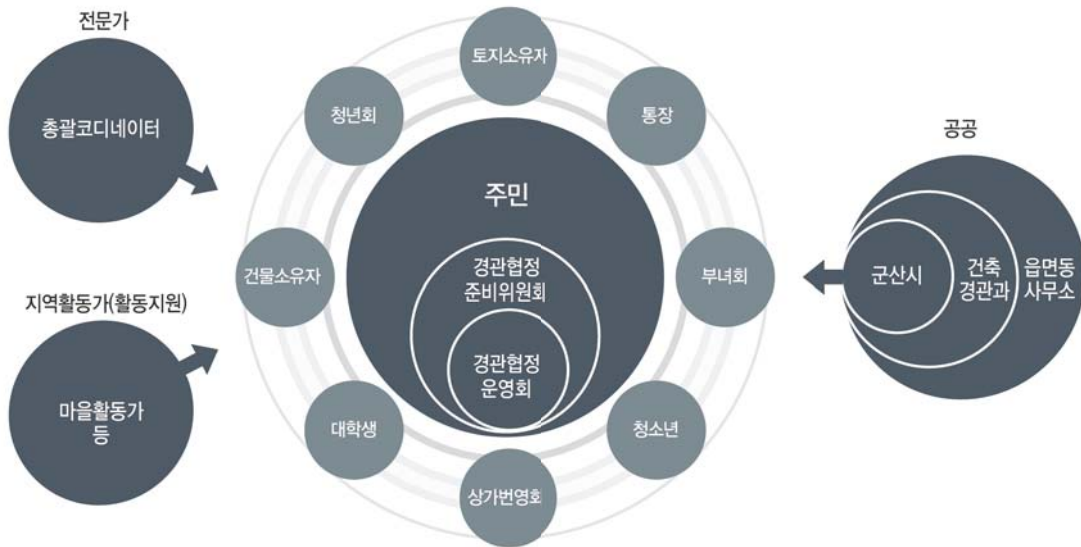
경관협정의 지원

- 자율적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협정계획서 작성 지원, 전문가지원, 사업지원 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

2. 경관협정의 추진방법

2.1 경관협정의 조직체계

-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하에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는 우선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며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부터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문가 외에 달성군에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경관협정 인가 관련 절차, 공공사업과 연계 및 지원금 지급 등 행정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구성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자문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음
- 주민은 주민리더를 뽑아 리더 중심의 자치활동 및 기존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파악하여 참여방안을 구상하고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 체결자를 모집해야 하며,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함



| 구분 | 역할 | | |
|-----|---|---|--|
| 공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민협의체활동 파악 • 경관협정 홍보 • 경관위원회 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인가 • 공고 및 주민연람 • 공공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 |
|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 • 경관협정 홍보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 • 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파악 • 경관협정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운영 및 관리 • 경관협정 변경 • 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 |
|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리더 중심 자치활동 •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 파악 • 경관협정체결 발의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및 신고 • 관련계획 및 사업의 검토 • 지역특성 파악 • 경관협정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 경관협정 운영 및 관리 • 경관협정 변경 • 경관협정 만료 또는 폐지 |

2. 경관협정의 추진방법

2.2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 체결자 전원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의 효력은 체결자에게만 있음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등임 (단, 지상권자의 경우는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 협정의 경우, 협정체결자의 범위에 포함가능)

1인협정

-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관협정 체결이 가능
- 1인협정은 기성시가지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스스로 체결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신개발지의 경관관리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2.3 경관협정의 체결사항

- 경관협정 체결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필수항목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각 사항의 예시 항목에서 누락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항목과 내용에 추가할 수 있음

| 체결내용 | 세부사항 |
|--------------------------|---|
| 건축물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배치, 창문위치, 출입문 위치, 지붕형태, 차양막, 부속시설, 부대시설 등 • 옥외광고물의 수량, 배치, 크기, 형태, 재료, 색채, 설치방법, 설치위치 등 |
|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물의 최소화, 차폐화, 미관처리 등 • 건축설비의 차폐화, 건축외관과 일체화 등 |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제외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대지 내 조경, 경계부 등 |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률, 토지형질변경, 획지의 규모, 건축 한계선 등 |
|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전통마을 등의 역사·문화경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 |

2. 경관협정의 추진방법

2.4 경관협정의 지원방안

- 인센티브란 바람직한 경관 연출을 위한 경관협정의 체결을 유도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각종 기준을 완화 적용하거나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보상적 인센티브, 유도적 인센티브, 마이너스 인센티브 등으로 구분
- 보상적 인센티브는 경관협정 준수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 받거나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
- 유도적 인센티브는 경관협정 체결 및 체결 후 준수를 권장할 목적으로 협정을 준수 시에 제공되는 제도적 이익을 의미
- 마이너스 인센티브는 경관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음으로 바람직한 경관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의미

| 체결내용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보상적 인센티브 | 보조금 | • 협정내용에 맞게 건물을 개보수할 경우, 보조금 지급 | •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 세 금 | • 협정체결시 시 세제 감면 | •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유도적 인센티브 | 공공사업 | • 협정체결시 경관 관련 공공사업 우선 배정 등 | • 공공에서 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착안, 내용, 집행시기 등을 인센티브/페널티로 활용 가능 |
| |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 • 협정체결시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 완화 |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운용 가능 |
| | 주차장 | • 협정체결시 주차장설치의무 배제 | • 조례 등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마이너스 인센티브 (규제) | 보조금 | • 협정 불이행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일부 환수 | • 보조금 지급시 단서조항 필요 |
| | 세 금 | • 협정 불이행시 세제 감면 조건 소멸 | •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
| | 공공사업 | • 협정체결 및 이행을 조건으로 우선 제공한 공공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협정위반자가 부담 | • 사업 우선 배정시 단서조항 필요 |
| | 용적률 건폐율 높이기준 | • 협정 불이행시 추가로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에 대한 비용 계산 후 환수 | •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 단, 환수금액은 추가로 받은 인센티브보다 커야 함 |
| | 주차장 | • 협정 불이행시 주차장 설치의무 부활 | • 협정서 단서조항 필요 • 주차장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 수립 필요 |

2. 경관협정의 추진방법

2.5 경관협정의 추진절차

- 경관협정의 추진절차는 크게 유도단계, 기획단계, 체결단계, 인가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경관협정의 유도단계는 초기단계로서 지역주민에게 취지를 전달하고 주민협의를 유도하는 단계
- 경관협정의 기획단계는 협정체결의 준비단계로서 협정체결자의 모집, 협정의 발의,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하는 단계
- 경관협정의 체결단계는 경관협정체결자가 경관협정의 내용 등을 담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소유자의 전원합의를 통해 체결하는 단계
- 경관협정의 인가단계는 협정서를 인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받아 공고하고 발효되는 단계
- 경관협정의 운영단계는 인가받은 경관협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협정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단계

| | | |
|----------|---------------|---|
| 유도 단계 | 주민협의체 파악 | • 현재 운영중인 주민협의체 파악 / 주민협의체 활용방안 마련 |
| | ↓ | |
| | 경관협정의 홍보 | • 주민에게 경관협정 취지를 전달 / 반상회와 지역신문, 주민센터 활용 |
| | ↓ | |
| 기획 단계 | 경관협정 운영체결의 발의 | •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 / 경관협정 취지를 홍보 |
| | ↓ | |
|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 •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조직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
| | ↓ | |
| |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 •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 시장 등에 신고 |
| | ↓ | |
| 체결 단계 | 경관협정서 작성 | • 협정내용, 목적, 유효기간 등 / 소유자등 전원합의 |
| | ↓ | |
| | 경관협정의 체결 | • 협정목적, 내용, 지역, 기간, 제재 등 / 소유자 등 전원합의 |
| | ↓ | |
| 인가 단계 | 경관협정 인가신청 | • 협정서 제출 / 시장, 군수의 승인 |
| | ↓ | |
| | 경관위원회 심의 | • 협정안 타당성 검토 |
| | ↓ | |
| | 경관협정 인가공고 | • 협정의 인가 즉시 공고 |
| | ↓ | |
| | 경관협정 발효 | •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 시 준수 |
| | ↓ | |
| 운영 단계 | 경관협정의 지원 | • 지원방안의 제시 / 사업계획서 작성 |
| | ↓ | |
| |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 •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1 유도단계

기존 주민협의체 파악

- 경관협정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고 주민들의 의지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지에서 결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의 활용이 필요
- 주민리더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상인회, 시민단체, 반상회 등의 주민협의체의 수, 각 협의체별 조직 구성 및 주요활동 등의 정보를 파악분석하여 활용방안을 마련

경관협정의 홍보

- 초기단계인 유도단계에서 지역주민에게 취지를 전달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
- 사업취지를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점이 있어 반상회와 지역신문,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작업이 필요
- 진행과정을 지역신문에서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음
- 공공 및 전문가는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능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2 기획단계

경관협정 운영체결의 발의

- 경관협정에 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다수의 지역주민이 경관협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찬성하면 주민 리더는 경관협정의 체결을 발의하고, 이 취지를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체결 워크숍 추진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 기사입력 2018/07/27 (12:57)

시흥시는 지난 7월19일 시흥시 경관브랜드 창출을 위한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체결 워크숍을 추진했다.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은 영우재에 이어 시흥시에서 두 번째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흥'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경관브랜드 창출을 위해 주민주도로 경관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추진한 워크숍은 물왕저수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3차 워크숍이다. 주민주도로 경관을 개선하는 주민약속사항 및 협정사업과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경관협정서를 작성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25명 전원(현재 상인의 56%)이 경관협정 체결에 동의했다.

경관협정을 통해 이행하게 될 주민약속사항은 옥외광고물 관계법령 준수 약속, 면포재배지 관리, 나눔주차 시스템 협조 등이다. 경관협정사업은 간판개선, 길 찾기 쉬운 안내사인 시스템 적용 등이다. 또한 종합적인 경관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교통시스템 개선, 공동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 예정이다.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을 위한 경관협정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경관협정 체결자를 모집
- 준비위원회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 경관협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포함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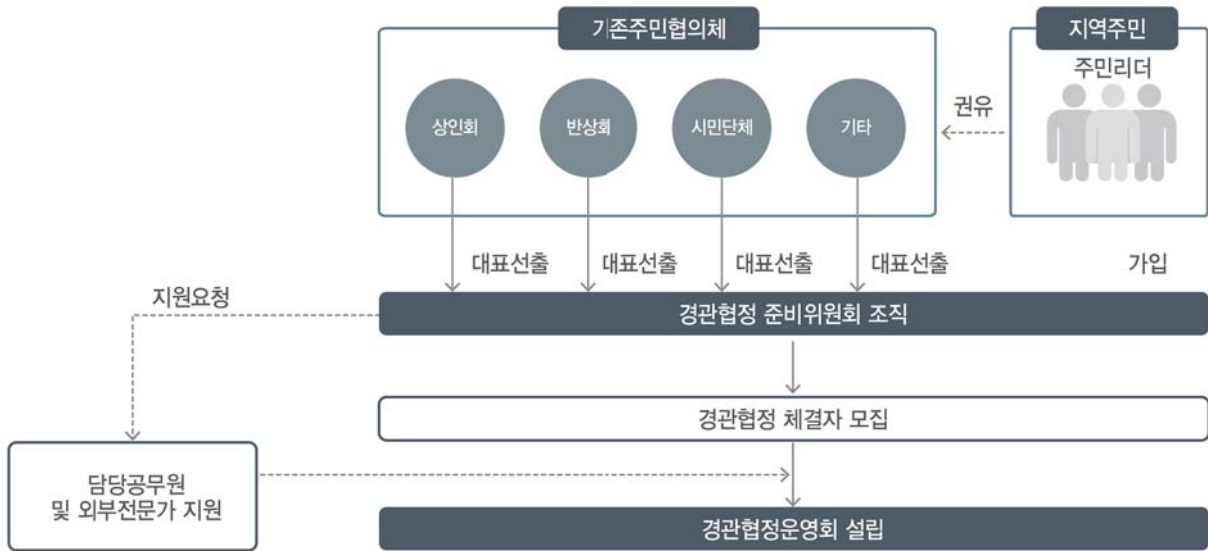
- 경관협정 체결자는 경관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 운영기구인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경관법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2 기획단계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경관법 시행령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2 기획단계

■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은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상위계획에 대한 조사 및 담당허물기사업, 그린파크사업,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관련사업에 대하여 조사
- 그리고 경관협정이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경관협정을 수립하기에 앞서 경관계획 수립내용을 검토하여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협정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특성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협정내용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관법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국제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련법령의 위배여부는 경관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드림민원실 소통과 참여 생활정보 행정정보 정보공개 드림허브 군산

생활정보

> 도시계획

▶ 생활정보 > 도시/주택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기업경제
- 건설
- 부동산
- 복지/보건
- 일자리
- 교육
- 상하수도
- 교통안내
- 도시/주택**
 - 도시계획
 - 공원녹지
 - 주택

| 도시계획 | | 지구 단위계획 | | |
|--------------------------------|-------------------|----------|----------------------|-------|
| 도시계획 | --검색항목-- | --검색조건-- | <input type="text"/> | |
| ▶ 총 3 개의 글이 있습니다. (1 / 1 페이지)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3 | 2015년 군산 도시관리계획-2 | 도시계획과 | 16,08,30 | 9941 |
| 2 | 2015년 군산 도시관리계획-1 | 도시계획과 | 16,08,30 | 7320 |
| 1 |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 도시계획과 | 16,08,30 | 14798 |

■ 지역특성을 파악

-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은 협정체결자와 함께 경관협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건축물 외관, 옥외광고물, 건축 설비, 외부공간, 토지, 역사문화 경관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
- 부족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충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3 체결단계

경관협정 체결할 주민 확정

- 경관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주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의 효력은 체결자에게만 해당
- 경관협정을 실제로 체결할 주민을 모집하고 확정된 후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체결자의 권리관계 및 위임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진행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경관법 시행령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3 체결단계

■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의 명칭

- 해당 경관협정의 명칭을 명시
- '00마을 경관협정', '00가로 경관협정', '00가로 광고물 협정' 등 협정지역과 협정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음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경관협정의 대상지역은 경관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의 토지로 함
- 협정체결에 동의한 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1/1,000~1/5,000 지도 등에 위치도를 작성
- 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협정체결자의 소유가 아닌 공공용지의 경우, 공공용지의 훼손이나 물리적인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정체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공용지도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경관협정의 목적

- 해당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 및 방향을 명시

경관협정의 내용

- 경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
- 경관협정의 내용은 경관법 제19조 4항에서 규정한 6가지 항목을 위주로 작성하고, 협정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기도록 작성

경관협정 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 경관협정의 체결에 동의한 체결자의 성명, 주소, 날인을 첨부하고, 체결된 협정을 운영할 경관협정 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명시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

-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규모에서는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당 경관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규모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경관협정 유효기간

- 경관협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유효기간을 명시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3 체결단계

경관협정서의 작성

- 지자체 보조금 등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기관 등과 협의하여 경관협정의 유효기간을 설정
- 유효기간의 표시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등으로 함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 등의 업무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담당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기타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최초 협정을 체결한 자가 매매나 증여·양도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경관협정도 승계되어야 하며, 경관협정서에 승계방법에 대해 명시
- 매매계약시 계약서에 협정의 승계에 대한 단서를 부가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 명시

기타 사항

- 이상의 항목 외에 기타 해당 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3 체결단계

주민동의서

- 경관협정 체결을 확정된 주민과 함께 작성한 최종 경관협정서에 체결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음
- 동의서는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 이외에 열람을 금함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4 인가단계

경관협정 인가 서류 준비

- 경관협정의 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경관협정 인정신청서에 다음에 기재하는 서류를 준비
 - ① 경관협정서 사본
 - ② 경관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한 이유서
 - ③ 경관협정을 체결한 구역을 나타내는 도서
 - ④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사용권을 갖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동의서
 - 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관협정의 인가신청

-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기 위해 인가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해당 지자체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협정의 인가 외에 변경 및 폐지 등의 업무를 담당
- 경관협정의 인가 시에는 경관협정의 목적, 내용의 타당성, 대상지 규모의 적정성, 유효기간의 적합성 등을 검토

경관법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4 인가단계

경관협정의 공고

- 경관협정이 인가되면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지자체 공보에 인가결과를 게시하고,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관할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서류가 비치하여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관법 시행령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시·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시·군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소 또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서비스 ▾

기관 소식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인가 공고

| | |
|--|------------|
| 경기도 시흥시 | 2018.12.21 |
| <p>1.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운영회로부터 신청된 관내 물왕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 200,000㎡ 일대(동서로 857번길 10번지 일대)에 대하여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및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 규정에 의거 경관협정을 인가하고, 2. 협정인가 내용을 경관법 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p> <p>01_물왕저수지-주변-경관협정-공고문.hwp다운14 KB 02_물왕저수지-주변-경관협정서.pdf다운513 KB</p> | |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5 운영단계

경관협정의 운영

-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관협정 전 과정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
-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기간별로 정비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시장군수는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경관협정구역 내 필요한 계획 등의 작성 지원한다.
- 경관협정에 관련한 계획수립 시 경관전문가 파견 지원한다.
- 경관형성재원 등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경관법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 경관협정의 작성 및 경관협정에 의한 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또는 재정상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경관협정 체결자 또는 경관협정 운영회 대표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경관법 시행령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경관협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3.5 운영단계

경관협정의 변경

- 기 인가된 협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정의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는 이행
- 경관협정의 명칭, 목적, 협정내용, 유효기간, 위반시 조치사항, 승계방법 등 인가신청 시 제출한 양식과 유사한 양식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기한 경관협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절차는 인가절차와 동일

경관법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관협정의 폐지

- 기 인가된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
-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은 인가 및 변경과 동일
-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협정의 경우, 협정신청서에 명시된 폐지 시 반환규정을 근거로 시장이나 군수는 이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경관법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4. 부록

4.1 관련서식

[서식1]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 | | |
|--|---|---|
| ① 명 칭 | | |
| ② 대상지역 위치·범위 | ※ 위치도, 범위 별지 작성 | |
| ③ 목 적 | ※ 별지 작성 가능 | |
| ④ 협정의 주요내용 | ※ 별지 작성 가능/세부내용은 별지 작성 | |
| 체 결 자 (경관협정운영회 포함) | ⑤명칭 | |
| | ⑥주소 | |
| | ⑦규약 | 별지 작성 |
| | 권리구분 | <input type="checkbox"/> 토지소유자 <input type="checkbox"/> 건축물소유자 <input type="checkbox"/> 지상권자 <input type="checkbox"/> 동의를 받은 자 |
| ⑧유 효 기 간 | | |
| ⑨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
| ⑩협정의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
| ⑪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
| ⑫비용에 관한 조치사항 | | |
| ⑬그밖에 협정에 필요한 사항 | | |
| 「경관법」 제19조제5항 및 「군산시 경관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서를 작성·체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협정체결자 주 소 성 명 | (인)(연명은 별지 작성 날인 및 간인) | |
| 군산시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경관법」 제19제4항 각 호의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2. 「경관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 |

4. 부록

4.1 관련서식

[서식2] 경관협정서

○ ○ ○ 경관협정서

제1조 [경관협정의 명칭]

본 협정은 “○○○ 경관협정” (이하 ‘협정’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경관협정의 목적]

본 협정은 ○○○을 통해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경관 관리, 운영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경관협정의 기본원칙]

본 협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 경관협정은 한다.
- ② ○○○ 경관협정은 한다.

제4조 [경관협정의 체결대상자]

본 협정의 체결대상자(이하 ‘체결자’)는 당해 대상지역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세입자 등)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 등’). 단,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할 협정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5조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본 협정의 대상지역(이하 ‘협정구역’ 이라 한다.)은 ○○○ 전역으로 한다.

제6조 [경관협정의 내용]

본 협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은 ○○○에 관한 사항, ○○○의 이용 및관리, ○○○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1]과 같다.

제7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4. 부록

4.1 관련서식

제8조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기]

본 협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본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및 운영]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관협정운영회를 설치하여 협정 내용의 이행 관리, 위반 시 조치,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과정 등 협정의 운영 전반을 관리한다.

제10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본 협정의 체결자는 협정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본 협정을 위반한 경우 경관협정운영회 또는 운영회장은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협정체결자는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경관협정체결]

본 협정은 경관법에 근거한 것으로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운영회장이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소유한다.

년 월 일

별첨1 : 경관협정 내용

별첨2 : 경관협정 체결 동의서

별첨3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별첨4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동의서

경관협정체결자 주소 :

성명 : (인)

경관협정운영회 회장 주소 :

성명 : (인)

4. 부록

4.1 관련서식

[서식3] 경관협정 내용

○○○ 경관협정 내용

| 항목 | 내용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4. 부록

4.1 관련서식

[서식6]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동의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동의서

| 연번 | 성명 | 소유형태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3 | | | | | |
| 14 | | | | | |

동일자 명 (협정체결자 명)

협정체결자의 과반수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에 동의함

년 월 일

대표자 외 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4. 부록

4.1 관련서식

[서식8]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

|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 | | | |
|---|----|--|------|
| 명 칭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운영목적 | | | |
| <p>「경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인가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군 산 시 장 (인)</p> | | |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물왕 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내용

제1조 [협정의 명칭]

본 협정은 “물왕 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협정의 대상지역]

본 협정의 대상지역은 시흥시 물왕동 물왕저수지 주변 식당밀집지 일대이며, 세부 위치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협정의 목적]

본 협정은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경관 관리, 운영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협정의 기본원칙]

본 협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쾌적하고 깨끗한 경관 형성을 위한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유지,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2. 옥외광고물 및 관련 시설물 등은 [별표2] 협정 세부사항을 따른다.
3. 지역 경관 개선의 수혜자인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 [협정의 체결대상자]

본 협정의 체결대상자(이하 ‘체결자’)는 당해 대상지역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세입자 등)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 등’). 단,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라 준수해야 할 협정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6조 [협정의 체결내용]

본 협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지역특화, 생활환경 등과 이와 관련된 주민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7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8조 [협정의 변경 및 폐기]

협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폐지는 체결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제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및 운영]

본 협정의 운영회 설치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 (1)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자 등이 참여하는 경관협정운영회(이하 '운영회')를 설립한다. 협정의 이행관리, 위반 시 제재결의 및 조치, 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반 사항을 관리, 결정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 또한 운영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2) 본 협정의 운영회는 체결자 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표결을 통해 설립된다.

제10조 [협정의 준수]

본 체결자는 협정의 내용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회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정의 승계]

협정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에 의해 새롭게 토지, 건물의 소유권 등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도 승계되며 반드시 매매 또는 임차계약시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이행에 따른 비용분담 및 후속조치]

본 협정에 따라 이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 토지의 신설, 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정해진 부분 만큼 시 예산과 주민부담을 책정하도록 하며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한다.

제13조 [위반 시 조치]

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할 사실이 있거나 위반한 경우, 운영회 혹은 시흥시장은 해당 행위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해당 위반인은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4조 [경관협정체결]

본 협정은 경관법에 근거한 것으로 협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 경관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협정 당사자, 경관협정운영회장이 서명·날인한 다음 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협정체결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성명 : 별첨 체결자 명단
 경관협정운영회장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성명 : (인)
 시 흥 시 장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성명 : (인)

4.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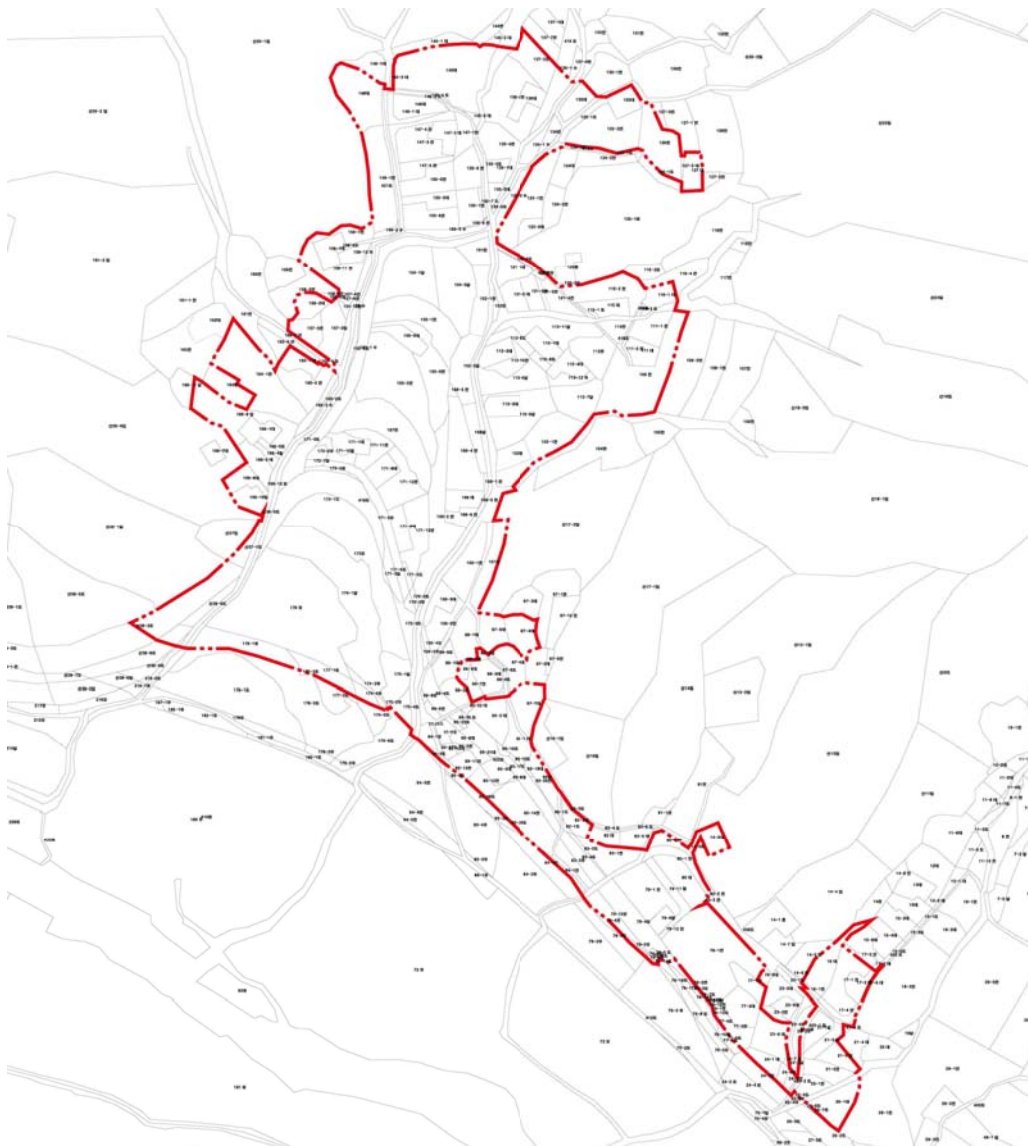
4.2 경관협정 사례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협정체결 현황

- 토지등 소유자(토지 163필지) : 77명
 - 사업자 : 53명
 - 총 체결자 : 116명(토지등소유자이자 영업자 14명 중복 제외)
- ※ 국 · 공유재산 제외

협정 대상지역 범위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시흥시 물왕저수지 주변

협정 세부사항

| 구분 | 역할 |
|---------|---|
| 옥외광고물 | • 각 점포에 간판과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크기와 개수는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 | • 방문객의 쉬운 길찾기를 위해 컬러코드를 사용한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을 준수, 적용한다. |
| | •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한다. |
| | • 간판의 재료 및 표현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정사항을 따른다. |
| | • 현수막과 임시 광고물의 설치를 최소화 하고 지정된 장소와 기간을 지켜 게시한다. |
| | • 마을 입구에 물왕저수지 브랜딩 사인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마을 안내에 활용한다 |
| 가로환경 | • 길과 영업장 사이에는 화분이나 실선표시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한다. |
| | •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마을 축제와 같은 특별 행사기간에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 | • 나눔주차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시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로변 노상주차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 |
| 지역특화 | • 연꽃 재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관리와 다양한 활용에 협조한다. |
| | • 브랜딩 디자인을 명함, 쇼핑백, 포장용품, 통합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 | • 통합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
| 마을환경 | • 쓰레기는 협정을 통해 결정한 위치에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한다. |
| | • 농한기에 적치물이나 컨테이너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 • 전신주와 통신주는 가급적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 • 공중화장실 주변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 협정의 승계 | • 부동산의 권리이전 등 체결자의 요건이 변동될 때에는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 위반 시 제재 | • 경관협정의 위반 여부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관협정 운영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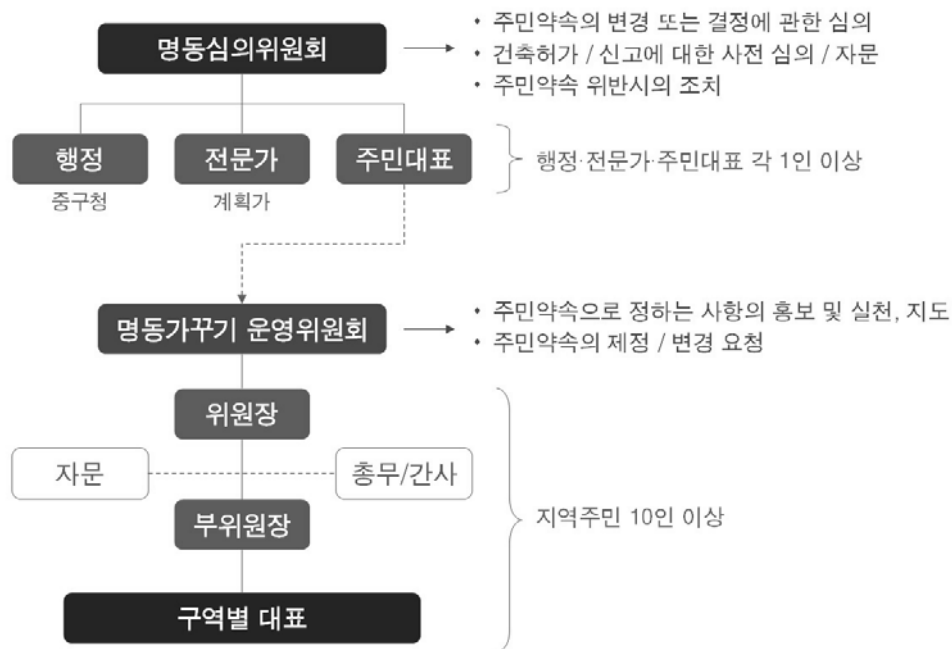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배경 및 목적

-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지침과 운영지침만으로 구체적이고 섬세한 가이드결정하여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번 결정되면 최소 5년 이내에는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변화하는 유행과 흐름에 민감한 명동지역의 특성상 건축물의 외관과 옥외광고물 등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민스스로의 약속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의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별로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명동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명동가꾸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약속’으로 정하는 사항의 홍보 및 실천, 지도를 담당하게 했고, 주민약속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요청의 권한을 부여했다. 요청된 ‘주민약속’의 심의는 중구(행정), 전문가(계획) 및 위촉된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명동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변경하도록 하였음
-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상업가로 구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의 협약서와 함께 사전심의를 제출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는데 의의가 있음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품격있는 명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약속(2006)

(전문) 우리 “주민참여 약속자” 들은 명동지역을 시민과 방문객들로부터 사랑받는 품격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참여 약속자가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사항을 다음 같이 약속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속은 서울시고시 제2005-351호(2005.11.17)에서 정하는 “명동관광특구 제1중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물, 부지 및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민약속 참여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명동지역 고유의 경관을 계승하고, 품격 있는 가로로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약속은 『품격 있는 명동가꾸기 주민약속(이하 『주민약속』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주민약속의 범위)

본 주민약속의 적용 범위는 서울시 고시 제2005-351호(2005.11.17)에서 정한 “명동관광특구 제1중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주민약속 참여자)

- ① 본 주민약속을 적용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주민약속 참여자’ 이라 한다)를 기본적으로 주민약속 참여자라 한다.
- ②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 상속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주민약속을 이행한다.

제5조 (주민약속 참여자가 할 일)

주민약속 참여자는 명동지역의 가로경관이 주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공동재산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본 약속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장 가로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명동지역내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행위시 건축물, 부지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각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한다.

제1절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제6조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 ① 상업가로구역 내에서 건축시 가로변을 기준으로 좌우측 인접건물의 외벽간 이격공지는 건물과의 재료 및 형태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벽 등의 디자인된 요소로 차폐한다. 다만 맞벽건축시에는 이격공지를 반드시 차폐한다.
- ② 관리상 필요한 경우 차폐요소와 일체의 디자인된 형태 내에서 창과 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이격공지 차폐는 해당 건축주가 인접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체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 차폐요소의 색채, 형태 등이 인접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의 적정성 ※ 건축주는 차폐요소의 형태 및 재료 등이 표현된 입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제7조 (개별점포의 폭원)

- ① 상업가로구역 내 1층부 개별 점포는 가로에 접하는 부분의 폭원이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면분절요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입면분절요소간의 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전면도로의 폭이 10m 이상인 대지의 입면분절요소간 거리는 4~10m를 권장하며, 10m 미만인 대지는 3~8m를 권장한다.
- ③ 입면분절요소는 가로변 입면을 기준으로 바닥면에서 2층(또는 그 이상) 바닥면까지 수직으로 연결되는 기둥 또는 폭 30cm 이상의 기둥형태의 디자인된 수직요소로 설치한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 입면분절요소의 디자인, 폭 등의 적정성 ※ 건축주는 입면분절요소의 형태 및 재료 등이 표현된 입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재료 및 색체계획 입면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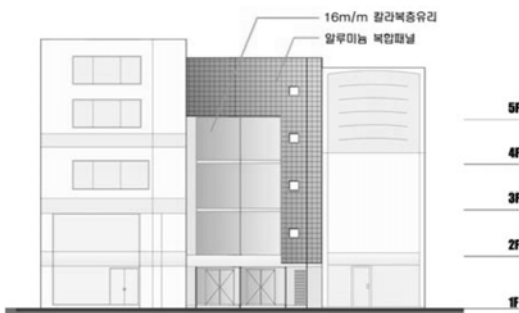


〈입면분절요소의 구성 예시〉

제8조 (건축물의 재료)

- ① 상업가로구역 내에서 건축시 석재, 벽돌, 목재 등의 자연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② 샌드위치 패널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반사성 재질의 마감 및 페인트 등을 이용한 도장 마감을 가급적 지양한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재료사용의 적정성 • 도장입면마감시의 색채사용의 적정성 |
| ※ 건축주는 색체계획이 첨부된 입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재료 및 색체계획 입면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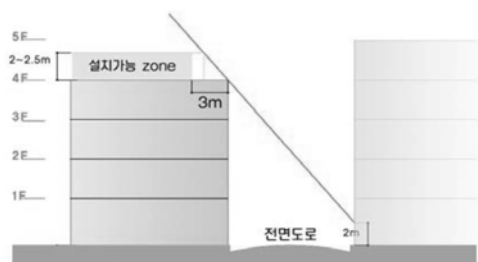
〈권장재료의 예〉

〈권장색채의 예〉

제9조 (옥상부 설비등의 처리)

- ① 건축시 옥상부 및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이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다만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건축설비가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벽 등의 차폐요소를 사용한다.
- ② 옥상부 설비시설은 보행자 시야를 고려, 가로와 면한 건축물 전면부로부터 3m 이내의 설치를 금지하며 경사지붕 등의 디자인된 형태를 도입하여 차폐한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부 설비 등 처리의 적정성 (가벽설치시 가벽의 디자인) • 지붕 형태의 적정성 |
| ※ 건축주는 설비시설이 포함된 옥상층 평면도 및 입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옥상부 설비 위치 예시〉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제2절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0조 (현수막에 관한 사항)

- ① 유리부착물 및 현수막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의 경우 명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 받은 규격, 설치기간, 장소에 한해 일시적으로 설치 가능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 • 현수막 규격 및 설치기간, 장소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 후 허가 | |
| ※ 현수막 설치를 원하는 자는 색채 및 규격이 표현된 계획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

제11조 (지주이용간판 및 공동연립간판 등에 관한 사항)

- ① 한 건물에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는 건물의 경우 주요 출입구에 공동의 연립형 간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연립형 간판은 지주이용간판 또는 벽면을 활용한 공동연립간판 또는 연립돌출간판으로 설치하며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을 도입, 이에 대한 적정성을 명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 • 공동연립간판 또는 연립돌출간판의 건물과 주변가로를 고려한 디자인의 적정성 | |
| ※ 재료 및 색채 등을 포함한 간판계획이 표현된 건축물 입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



<연립형 간판의 조성 예시도>

(공동연립간판)



(연립돌출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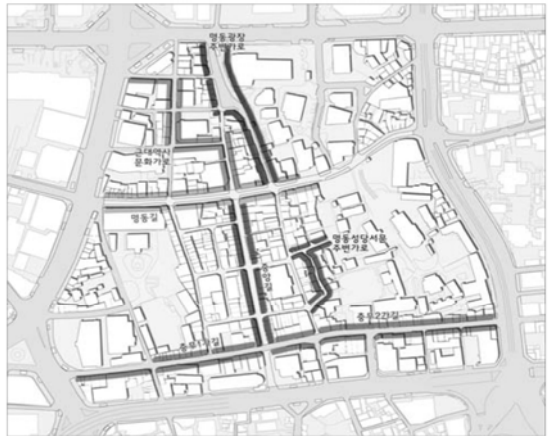
(지주이용간판)

제3절 특화가로별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

제12조 (특화가로 운영 대상)

- ① 특화가로의 운영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적용지역 |
|--------------|---|
| 근대역사·문화가로 | 옛 국립극장으로부터 옛 증권거래소, 메트로호텔, 한국전력사옥에 이르는 가로 |
| 명동광장 주변가로 | 명동1가 20m 도시계획도로 (중로1-158) 일대 |
| 명동성당 서문 주변가로 | 명동성당 서문 ~ 명례방길에 이르는 가로 |
| 명동길 | 명동입구~명동성당 이전 |
| 충무1·2가길 | 충무1가길~충무2가길 |
| 중앙길 | 명동역~국립극장사거리 |



제13조 (특화가로별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① 특화가로별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가이드 라인 |
|-----------|--|
| 근대역사·문화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건물과 수평분할요소를 가급적 일치함 • 외관특성화 요소(코니스, 돌출기둥, 기단부)를 가급적 도입하여 근대건축물 풍의 경관을 조성하도록 함 • 1층 쇼윈도우는 개폐형(쇼윈도우 개방시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50%이상 직접 만날 수 있는 가벽형 구조)으로 조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함 • 반사성 재료는 금지하며, 근대건축물과 조화되는 벽돌, 석재 등의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색채는 원색계열은 금지하며 근대건축물 외관과 어울리는 색 사용 • 근대건축물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 및 운영 |
| 명동광장 주변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건물과 수평분할요소를 일치함 • 명동광장 및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조명 설치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운영 권장 1층부 어닝 등 차양을 설치하도록 함 1층부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입점을 권장하며 쇼윈도우는 개폐형으로 조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 |
| 명동성당 서문 주변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건물과 수평분할요소를 일치하도록 함 • 1층부에는 어닝 등 차양을 설치하도록 함 • 1층부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입점을 권장하며 쇼윈도우는 개폐형으로 조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 |
| 명동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부 벽면한계선 후퇴 부분은 옥상정원 및 테라스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 • 1층부에는 어닝 등 차양을 설치하도록 함 • 야간조명은 폐점후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함 |
| 충무1·2가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부 벽면한계선 후퇴 부분은 옥상정원 및 테라스로 적극 활용하도록 함 • 1층부에는 어닝 등 차양을 설치하도록 함 • 1층부 쇼윈도우는 개폐형으로 조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 • 야간조명은 폐점후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함 |
| 중앙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 조망을 고려하여 1층부에 한해 어닝 등 차양을 설치할 수 없음 • 야간조명은 폐점후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함 |
| 기타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이외의 사항은 일반가이드라인을 준수 • 측면이격공치 차폐시 차폐부분은 건축물 전면부 외관과 유사한 재료 및 색채를 사용 • 명동축제 등 일정기간에 한하여 아래 도면에 지정된 구간내 1층 전면부는 카페테리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평상시에는 도로를 전용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가판대 설치 등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

② 특화가로별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가이드 라인 |
|--------------|--|
| 근대역사·문화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니플렉스 재료의 광고를 금지하고, 야간조명 계획이 반영된 광고물 설치 • 외관특성화 요소와 재료를 고려하여 광고물을 제작하며, 관형의 광고물보다는 입체적 조형요소가 강조된 광고물 설치 권장 • 광고물에 형광등, 네온 등 확산 조명 금지 • 코너스, 돌출기둥과 같은 외관특성화 요소와 조화될 수 있도록 광고물을 설치하되 특성화 요소에 직접 설치하는 것 금지 |
| 명동광장 주변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형의 광고물보다는 어닝, 쇼윈도우, 야간조명과 함께 계획된 입체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함 |
| 명동성당 서문 주변가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형의 광고물보다는 어닝, 쇼윈도우와 함께 계획된 입체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함 |
| 명동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간판은 채널, 스키시 방식으로 제작하도록 함 |

| | |
|--------|---|
| 충무1·2길 | - |
| 중앙길 | - |
| 기타 | - |

제4절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제14조 (옥상조경의 조성 및 운영)

- ① 옥상조경을 조성시 당해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을 참조하여 조성하며 벤치 등 휴게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옥상조경이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영업시설과는 별도의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고 10시부터 22시까지 일반인의 접근이 자유로운 구조로서 건물 1층 부분에 개방시간 및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옥상조경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③ 옥상부에 옥상조경을 조성하지 않을 시에는 디지털된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명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④ 건축주는 옥상조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 명동심의위원회 중점심의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조경의 조성형태 • 옥상조경 상시개방 가능한 구조의 적정성 (해당시) |
| ※ 건축주는 옥상조경 활용계획이 표현된 평면도 및 단면도를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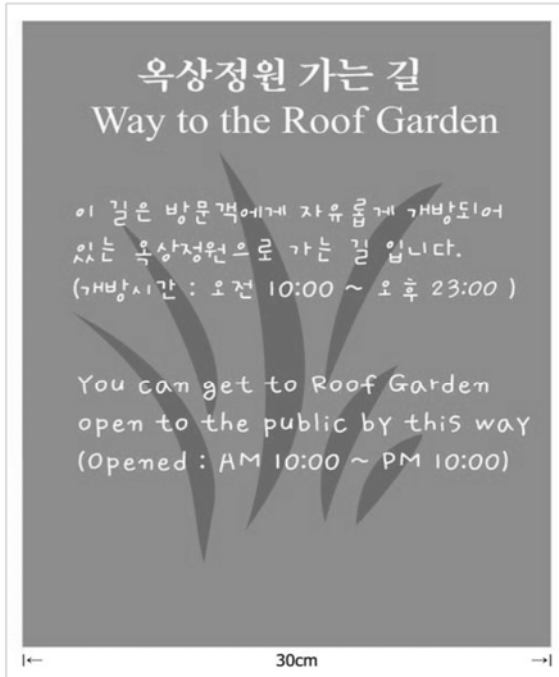
<옥상조경 조성예시도>

- ⑤ 옥상조경을 설치시에는 1층 진출입구 외벽면에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 부착위치 : 옥상정원으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1층 출입구 가로변 외벽면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20cm~150cm 사이

제5절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15조 (쓰레기 관리)

- ① 영업용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환경미화원의 신호가 있을 때 지정된 장소에 내어놓는다.
- ②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 ③ 편의점, 판촉물배출자 등 쓰레기를 유발하는 점포 및 개인은 입구에 쓰레기통을 설치한다.

제16조 (차 없는 거리의 조업차량 통행 가능시간)

- ① 차 없는 거리내 모든 점포의 조업차량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오전10시부터 오후10시 사이) 이외의 시간에 진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야간조명의 운영)

- ① 야간조명을 설치 및 운영시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부드러운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연출하도록 하며 점조명 (spot-lighting), 네온사인을 이용한 조명 등 과도하게 일부만 부각되는 조명을 지양한다.

- ② 외벽면 투사형 야간조명의 운영시간은 일몰시간부터 24시까지로 운영한다.
- ③ 1층 매장의 야간조명은 폐점시간부터 24시까지 운영한다.

제18조 (외부공간 및 가로환경 위해시설의 관리)

- ① 점포 앞 도로에 물품을 수납하거나 진열하지 않는다.
- ② 건물 외부공간에서 음식물 준비, 물품진열 등 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벽면 부착식 점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 깊이로 한도를 정한다.
- ③ LPG가스통 등 위험시설은 건물 외부에 설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보강하여야한다.

제19조 (공사에 관한 사항)

- ① 공사는 가급적 야간 및 한기에 집중 실시하여 활동시간의 보행자 및 인접 점포들에게 피해가 가급적 미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사 시 외관은 디자인하거나 식재하여 미관이 유지되도록 한다.
- ③ 공사 시 점포 앞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등 외부공간도 함께 관리한다.

제20조 (소음관리)

- ① 외부스피커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사용할 경우 음향이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제6절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제21조 (유비쿼터스 환경조성을 위한 공간제공)

- ① 미디어보드를 설치시에는 가급적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고화질의 영상표출이 가능한 스크린을 부착하여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를 구현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보화추진단과 협의후 설치한다.
- ② 대규모 건물의 공개공지 또는 옥상조경 등 일반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시 자연과 첨단기술을 어우러져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등 정보제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보화추진단과 협의후 설치한다.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제3장 주민약속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주민약속의 운영)

- ① 주민약속으로 정하는 건축물, 부지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명동심의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운영한다.
- ②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 등 사유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③ 주민참여 약속자는 사전에 주민약속 서약서를 작성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명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약속의 준수여부를 심의 받도록 한다.

제23조 (주민약속의 변경)

- ① 주민약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참여 약속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동가꾸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발의를 통해 명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주민약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약속 참여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24조 (주민약속의 위반)

- ① 주민약속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는다.

제25조 (주민약속의 효력)

- ① 주민약속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② 주민약속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존속시 까지로 한다
- ③ 매매 등의 사유로 주민약속 참여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민약속은 매수자가 이를 승계하며 매도자는 이러한 내용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명동가꾸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①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주민참여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을 주민약속(안)으로 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동가꾸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의 주민약속(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명동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주민약속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실천, 지도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위원들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동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10인 이상의 주민대표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각 1명 이상 둔다.

- ⑤ 주민약속 참여자가 주민약속과 관련된 건축행위시 운영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요청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주민약속의 운영을 명확하게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 및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 ① 본 약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중구청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실시한다.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서울시 명동 관광특구

협정 세부사항

- 명동지역에서는 별도의 '주민약속' 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특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외관, 옥외광고물, 운영 등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 스스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구분 | 역할 |
|-------------------------------|---|
|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이격공지의 차폐, 개별점포의 폭원 (입면분절요소의 설치 등), 설비 등의 처리, 지붕 디자인, 건축재료, 옥상조경 조성 및 운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지주이용간판 및 공동연립간판 등에 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관리가 필요한 사항 |
| 환경개선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조명의 운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처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차량 진입가능시간 • 기타, 환경개선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 특화가로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가로별 건축물 형태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특화가로에 대하여 경관관리가 필요한 사항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변경시 주민약속 서약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승계에 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약속의 유효기간 및 위반시의 조치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동가꾸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U-서울 마스터플랜(U-명동)에 관한 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명동심의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협정책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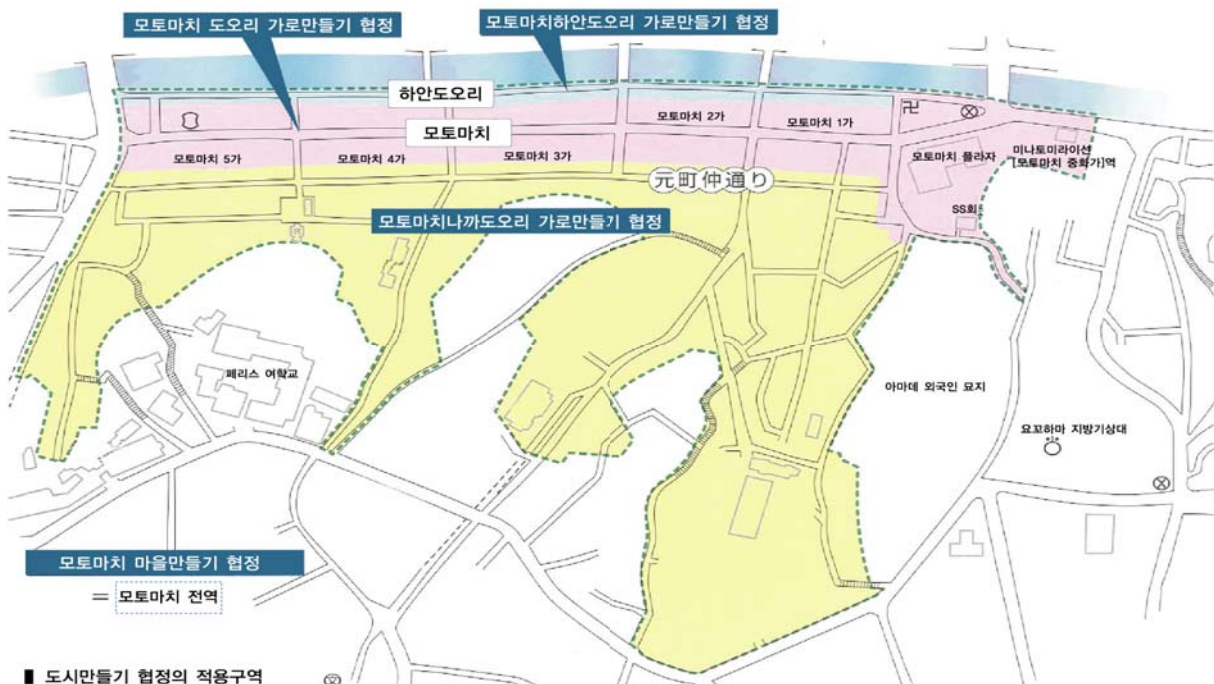
- 모토마치지구의 각 협정은 「모토마치 나까도오리 가로경관 유도지구 지구계획」 과 「모토마치지구 지구계획」 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함
- 「요코하마 모토마치 도시만들기 헌장」 을 공통의 가로만들기 이념으로서 도입하고, 가로 만들기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함

협정의 구조

- 사는 사람을 위한 「마을만들기 협정」 은 모토마치 자치운영회가, 장사하는 사람을 위한 「가로만들기 협정」 은 협동조합 모토마치SS회, 모토마치 나까도오리회, 모토마치 하안도오리회가 각각 책정, 운영

협정의 담당구분과 적용구역

- 「모토마치 마을만들기 협정」 은 모토마치 자치운영회가 담당하고 모토마치지구 전역의 주택, 공공주택 등에 적용
- 「모토마치 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 은 협동조합 모토마치SS회가 담당하고 해당 협정에서 지정된 적용구역 외 별도로 기간을 정해 하안도오리에도 적용
- 「모토마치 나까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 은 모토마치 나까도오리회가 담당하고 해당 협정에서 정해진 적용구역 외 나까도오리 이남(아마테쪽)의 모토마치지구에서 사업활동을 실시할 때에도 준용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모토마치 마을만들기 협정

| 구분 | 내용 | |
|-------------------------------------|---|---|
| 모토마치의 매력적인 경관을 유지하고 주거존속을 위하여 | | |
| 건물 용도 | 맨션등의 집합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및 사무소 용도 이외의 용도는 금지 집합포스트를 설치하고 쓰레기 수집장소를 확보 |
| | 주차장 주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용 입체주차장은 2층까지, 집합주택 등에서 대형 주차장 경우에는 일조, 소음, 교통문제에 배려, 주민과 합의형성도모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상점 등에 위압감을 주거나 위해가 있는 시설 금지 규제되지 않는 용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협의 결정 |
| 건물 형태 · 의장 | 디자인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벽·지붕의 디자인·색채는 자극적인 모양이나 색채를 피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도모, 주로 주택 1층 부분은 각각의 가로에 어울리는 디자인에 배려 |
| | 펜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에 대비하고 도로에 면한 생활타리에는 블록담과 돌담은 피하고 생활타리 또는 식재 |
| | 조명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행과 방범을 위해서도 문등, 형광등, 처마밑 조명의 설치 |
| | 안테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드러지게 경관을 저해하는 안테나의 설치는 피함 |
| 간판·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과의 조화를 어지럽히는 간판·광고물의 설치는 금함 | |
| 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과 부지 내의 녹화, 발코니, 현관 등 가로에 면한 부분은 꽃으로 장식 | |
| 자동판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는 가급적 피하고 소음과 쓰레기의 산란에 배려 | |
| 거주방법의 규정을 지키고 안전하고 기분 좋게(쓰레기, 소음 등) | | |
| 마을만들기의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구역 내 세대주·사업자는 입회하고 마을만들기에 협력 임대물건소유자는 그 임대물건사용자에 대해 모토마치 자치운영회에 입회할 것을 임대계약서 상에 의무화 분양집합주택 건축예정자는 판매시점에 구매자에 대해 모토마치 자치운영회에 가입할 것을 건물판매계약서 상에 의무화 | |
| 쓰레기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일의 지정시간까지 지정된 수집장소에 배출 쓰레기는 요코하마시에서 정해진 료를 지키고 감량화와 분리수거, 재활용에 의해 자원화에 협력, 전날 쓰레기 반출금지 | |
| 가로 및 건물 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내 및 주변의 초화는 항상 깨끗하게 반입 낙서는 방치하지 말고 제거 등의 신속히 대응 | |
| 페트의 사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트는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절도있게 사육 | |
| 개의 사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설물 등의 청소를 하고 지역의 위생면에 유의 | |
| 소음에 대한 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소리의 연주와 오토바이 등 소음원인이 되는 행위는 금지 | |
| 침구세탁물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구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는 경관에 배려 | |
| 빈터·빈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터는 풀깎기조례 등을 준수, 치안상과 미관의 관점에서 소유자는 유지관리 |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모토마치 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

| 구분 | 내용 | |
|--------------------------------------|--|---|
| 사람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 | |
| 건물 용도 | 맨션등의 집합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맨션 등에서의 거주 및 사무소 용도 이외의 용도는 금지 맨션 등에는 집약포스트를 설치하고 쓰레기 수집장소를 확보 출입구는 모토마치 도오리에 면해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함 |
| | 애완견가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냄새 등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호텔여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기문란의 염려가 있는 영업형태의 호텔여관은 금지 |
| | 금융점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금융 등의 개점은 금지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에 면한 1층 부분에는 주차장, 주류장, 차고의 설치 금지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과 상점에 위압감을 주거나 위해가 있는 시설은 금지 |
| 건물 형태 · 의장 | 건물의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도로에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 모토마치 도오리에서 하안도오리 사이의 건물높이는 25m이하 |
| | 벽면의 후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토마치 도오리에 면한 건물은 1층 부분의 벽면을 후퇴시켜 보행을 연속적으로 확보 벽면지정선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의 거리 1.8m 이상, 높이를 3.0m 이상으로 하고, 벽면후퇴부는 지주가 없는 건축구조 후퇴부분에서의 자동판매기와 공작물 등의 설치 금지 2층 이상의 벽면을 후퇴시킨 경우는 연속되는 처마밑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0m 이상의 2층 플로어 레벨 부근에 깊이 1.5m 이상의 차양을 설치 |
| | 외벽 디자인 · 재질·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건물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하고, 가로와 조화를 도모 1층 플로어 레벨에서 높이 15m까지의 파사드 의장을 중시 편의점 등 체인점의 점포 색채조명 등은 가로와의 조화를 중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가로만들기 위원회의 지도 |
| | 1층 개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윈도우, 쇼케이스 등에 대해서는 각 점포거리의 개성을 창출 셔터 등은 윈도우 쇼핑이 가능하도록 투시성을 확보 |
| | 처마밑조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연속해서 점등, 조도는 80~100룩스 |
| | 스카이 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의 도시경관에 공헌하기 위하여 옥상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설비·기계류 등이 보기 싫지 않도록 함 |
| | 배리어 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자와 고령자도 사용하기 쉬운 구조로 하기 위하여 입구의 단차해소, 손님용 화장실 확보,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을 고려 |
| 간판·광고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사드의 간판·광고물·차양류는 작고, 개성적인 장식 간판 자기점포 이외의 간판 및 1m×1m 이상의 포스터 등은 금지 | |
| 도로 및 사유지 보도의 취급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재정비사업의 시공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전 협의 「가로만들기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관계단체·기관과 협의 |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모토마치 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계속)

| 구분 | 내용 | |
|---------------------------------------|---|--|
| 친절함 넘치는 가로양성을 위하여, 모토마치 상인스타일 확립을 위하여 | | |
| 도로 보도 등의 사용 방법 | 후퇴부에서의 판매 등 | • 점두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 사전에 「가로만들기위원회」에 소정의 문서를 제출한 후 승인, 벽면후퇴지정선에서 90cm 이내의 설치를 지키는 것만을 인정 |
| | 점용물건등 | • 도로점용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소정의 허가신청 전에 가로만들기위원회의 승인 |
| | 호객판매 | • 호객을 위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전단을 배포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금지. 운용은 「가나가와겐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름 |
| | 쓰레기 처리 | • 일반폐기물 회수업자에 의뢰해서 수집하거나 모토마치 SS회 지정의 쓰레기 주머니를 구입해서 지정요일장소에 배출 |
| | 가로에서의 물건적치 | • 모토마치 도오리에서의 물건적치는 원칙으로 금함. 부득이한 경우 모토마치 도오리에서 물건적치를 하는 경우는 인근 및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기간에 실시 |
| | 가로 및 건물의 미화 | • 모토마치 도오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플랜터의 꽃 반입에 협력 • 발코니와 벽면, 점포범위를 꽃으로 장식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함 • 각 점포앞 보차도 청소는 원칙적으로 각 가게에서 매일 실시 • 낙서는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간에 대응 |
| 영업 시간 · 정기 휴일 | 영업시간 | • 야간의 활기를 야성하기 위하여 오후 8시까지 영업 • 윈도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윈도우 내의 조명은 오전 10시 까지 점등 |
| | 심야영업 | •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실시하는 점포는 다른 가게 및 거주 등에 대한 소음을 배려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시. 만일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협의 |
| | 정기휴일 | • 가급적 연중무휴로 영업 • 정기휴일을 정하는 경우는 손님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가게 앞에 표시 |
| 가로만들기 협력 | • 가로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용구역 내의 사업자는 모토마치 SS회에 입회하여 가로만들기에 대해 협력 • 임대물건소유자는 그 임대물건사용자에 대해 모토마치 SS회에 입회하는 것을 임대계약서 상의 의무화함으로써 회비 등을 징수와 지봉의무를 대행하던가 관리회사에 그 의무를 의뢰 | |
| 기타 | • 공지, 빈건물이 된 경우는 빨리 모토마치 SS회에 보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협정 각 항목을 준수 • 주차장 · 주류장의 확보와 안전성에 대한 배려 • 주민이 사용하는 차는 물론 점주, 종업원이 통근에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인근 및 보행자의 안전에 배려. 바이크, 자전거로의 통근도 주차장을 확보 |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

| 구분 | 내용 | |
|--------------------------------------|--|--|
| 사람의 마음에 호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조하기 위하여 | | |
| 건물 용도 | 맨션등의 집합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및 사무소 용도 이외에 풍기를 문란케 하는 용도금지 맨션 등에는 집약포스트를 설치하고 쓰레기 수집장소를 확보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카도오리는 노퍽이 협소하기 때문에 통과차량의 진입을 적게 하기 위하여 도오리에 면한 주차장의 설치는 피함 주차장을 설치 시 도로경계선 보다 0.5m정도 후퇴 설치 주차장 대책은 행정 및 주변 가로만들기 관계단체 등과 협의 |
| | 슈퍼마켓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카도오리 측의 물건적치뿐 아니라 개성있는 파사드로 |
| | 애완견 가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냄새 등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협의 맹견, 파충류 등 사람에게 위해가 있는 동물의 취급은 금지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압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시설은 금지 지구계획, 가로만들기 협정에서 벗어나는 용도는 협의 |
| 건물 형태 · 의장 | 1층부 벽면 등의 후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 연속된 보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카도오리에 면하는 건축물의 1층부분(높이 3m까지)을 도로경계선에서 모토마치도오리측은 1.5m, 산측은 1.0m 이상 후퇴 |
| | 외벽디자인 ·재질·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건물 개성을 최대한 살린 디자인 편의점 등 체인점의 점포 색채·조명 등에 대해서는 가로와의 조화를 중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 |
| | 1층 개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윈도우, 쇼케이스 등에 대해서는 각 점포거리의 개성을 창출 셔터 등은 윈도우 쇼핑이 가능하도록 투시성을 확보 |
| | 처마밑조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연속해서 점등, 조도는 80-100룩스 |
| | 스카이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코하마의 도시경관에 공헌하기 위하여 옥상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설바기계류 등을 디자인하고 옥상녹화 실시 |
| 배리어 프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구의 단차, 손님용 화장실, 엘리베이터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장애자와 고령자도 사용하기 쉬운 구조 | |
| 간판·광고물·공작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카도오리의 가로경관의 특색으로서 점포의 그림간판설치 간판·광고물·차양류는 가급적 작게 하고 개성적인 것으로 함 | |
| 옥상 및 가로 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녹화에 힘쓰고 벽면과 가로는 꽃으로 장식 | |
| 도로 및 사유지 보도의 취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재정비사업의 시공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전 협의 「가로만들기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관계단체기관과 협의 | |
| 자동판매기·손님용 편의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오리에 대해 보기 싫지 않도록 하고 소음과 쓰레기의 산란에 주의, 유해도서 판매금지 보도공간을 제외하고 사유지 측에 여유가 있는 점포는 벤치·테이블 등의 설치를 부탁 | |

4. 부록

4.2 경관협정 사례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의 경관협정

모토마치 나카도오리 가로만들기 협정(계속)

| 구분 | 내용 | |
|--|--|--|
| 직과 주가 공존하고 사람들의 정감을 느끼는 가로가 되기 위하여 | | |
| 주인이 살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토마치지구는 거주와 상업의 공생을 목표로 한 가로만들기를 추진 오너는 가급적 소유하는 건물에 거주 | |
| 폐해행위의 금지와 주의할 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 냄새 등 이웃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식음점포는 배기필터 등의 설치 금지 점두판매(와곤세일 등)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금지 호객을 위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전단을 배포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금지 | |
| 영업 시간 | 영업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8시까지의 영업. 또 윈도우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윈도우 내의 조명은 오전 10시 까지 점등 |
| | 심야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실시하는 점포는 다른 가게 및 거주 등에 대한 소음을 배려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조건 |
| 정기 휴일 | 정기휴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급적 연중무휴로 영업 정기휴일을 정하는 경우는 손님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가게 앞에 표시 |
| 정품을 사랑하고 만드는 사람과 점주의 집착이 표현되는 가로가 되기 위하여 | | |
| 크래프트맨십의 가게만들기를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지널리티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질 높은 상품과 정성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게조성 | |
| 오픈된 가게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에게 가게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손님과의 회화가 가능한 가게만들기 | |
| 보이는 가게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을 만드는 가게는 1층 부분에 만드는 것이 보이게 조성 | |
| 가로를 만들고, 키우고, 지켜가기 위하여 | | |
| 가로를 만들고, 키우고, 지켜갈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물론 소유자, 건물소유자 등도 나카도오리회에 입회하여 가로만들기에 협력 임대물건소유자는 임대물건사용자에 대해 나카도오리회에 입회하는 것을 임대계약서 상에 의무화함으로써 회비 등의 징수와 지불의무를 대행하던가 관리회사에 그 의무를 의뢰 | |
| 가로 및 건물 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는 서로 협력하여 이웃과 협력하여 매일 시행하고 낙서는 방치하지 않도록 함 도오리에 설치된 플랜트박스의 꽃은 이웃과 협력해서 반입 | |
| 이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의 이벤트에는 적극적으로 참가 | |
| 차량교통 자주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카도오리에 대한 차량진입은 가급적 작게 하도록 한다. | |
| 주차장·주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이 사용하는 차는 물론 점주, 종업원이 통근에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 | |
| 방화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재 등 긴급시 모토마치 자치운영회 방화매뉴얼 따름 | |
| 물건운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건운반은 소음 등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대에 실시 | |
| 쓰레기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업자에 의뢰해서 수집하거나 모토마치 SS회 지정의 쓰레기 주머니를 구입해서 지정요일·장소에 배출 | |
| 점용물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 소정의 허가신청 전에 가로만들기위원회의 승인 | |

4. 부록

4.3 경관협정 시범사업 사례

■ 부산, 보수동 중복도로 경관협정

대상지 특징 및 목적

- 과밀 노후한 다세대, 다가구 급경사주택지의 생활골목 / 빌라 1층 주차장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탈선장소로 방치
- 경관협정 추진을 통한 안전한 생활가로를 조성 필요

추진체계

| 구분 | | 내용 |
|-----------|---------|-----------------------------------|
| 전문가 및 활동가 | 총괄코디네이터 | 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
| | 자문위원 |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
| | 마을활동가 | 양화니 공정여행 핑크로드 대표 |
| 주민 | | 보수동 주민센터, 대상지 주민, 지역단체(주민자치위원회 등) |
| 지자체 | | 부산광역시청 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 |

추진과정

| 일정 | 추진사항 | 주요내용 |
|---------------|-----------|-----------------|
| 2014.07 | 제1차 워크숍 | 착수 협의 |
| 2014.08 | 과업 착수 | 사업 및 지원방안 검토 |
| 2014. 09, 12 | 주민설명회 | 경관협정 지원 시범사업 설명 |
| 2014.10 | 선진지 답사 | 경관협정 선진지 답사 |
| 2014.11 | 제2차 워크숍 | 중간경과보고 |
| 2014.12 | 현장 모니터링 | 보수동 현장 모니터링 |
| 2015. 01 ~ 02 | 주민워크숍(6주) | 운영위조직 및 협정서 작성 |
| 2015.03 | 제3차 워크숍 | 최종보고 : 주민발표 |

경관협정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건물의 외관 색채 디자인 | 마을과 어울리도록 함 |
|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 주차장은 깨끗하게 유지 |
| 부지 녹지화 | 자기소유 혹은 관리하는 부지 녹지화 |
| 공공용지 |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 |
| 주민활동 | 마을 내 청소활동은 서로 협력·추진 |

4. 부록

4.3 경관협정 시범사업 사례

| 옹진,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경관협정

대상지 특징 및 목적

- 2011년 토탈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과 함께 경관협정 체결 이후 사후관리 부족 및 마을활성화 효과가 미비
- 경관협정 내용보완을 통한 문갑도 경관협정 지속 필요

추진체계

| 구분 | | 내용 |
|-----------|---------|------------------------|
| 전문가 및 활동가 | 총괄코디네이터 | 김경배 인하대학교 교수 |
| | 자문위원 | 정두용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 |
| 주민 | | 경관협정운영회 회장, 문갑도 마을주민 |
| 지자체 | | 옹진군청 건축민원과, 덕적면 주민자치센터 |

추진과정

| 일정 | 추진내용 |
|-----------------|-----------------------------|
| 2010.01~2011.08 | 문갑도 토탈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1차 경관협정) |
| 2014.08 | 문갑도 날개달기 프로젝트 / 과업착수 및 현황조사 |
| 2014.09 | 문갑도 자구리 축제 |
| 2014.10 | 1차 주민워크숍 및 설문조사 |
| 2014.12 | 구상안 주민협의, 전문가 워크숍 |
| 2015.02 | 2차 주민워크숍 |
| 2015.04 | 경관협정 수정·보완 및 용역완료 |

경관협정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차량통행 | 문갑도를 걷고 싶은 마을로 만들 |
| 쓰레기 | 매월 1회 마을 대청소를 실시 |
| 마을 우물 | 오염물질 투척 금지 |
| 화단, 텃밭 | 구역을 나누어 책임관리자 지정·관리 |
| 폐가 | 소유주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폐가 철거 |
| 외부인관리 | 전입자는 경관협정을 충분히 인지 |
| 마을축제 | 자구리 축제를 대표 마을축제로 육성 |

4. 부록

4.3 경관협정 시범사업 사례

익산,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경관협정

대상지 특징 및 목적

-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낙후, 공동화 현상 / 2011년부터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진행
-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와 연계된 경관협정 필요

추진체계

| 구분 | | 내용 |
|-----------|---------|----------------|
| 전문가 및 활동가 | 총괄코디네이터 | 오민근 창연 대표 |
| | 자문위원 | 익산문화재단 |
| 주민 | | 문화예술의 거리 주민협의회 |
| 지자체 | | 익산시 도시경관팀 |

추진과정

| 일정 | 추진내용 |
|---------|---|
| 2014.09 | 과업착수 / 경관협정 개념 및 국내외 사례 소개 |
| 2014.10 | 경관협정 관련법규 이해 (2회) |
| 2014.11 | 경관협정 집중검토회의 (2회) / 두꺼비하우징 이주원 대표 특강 |
| 2014.12 | 경관협정 집중검토회의 (3회) |
| 2015.01 | 경관협정 집중검토회의 (2회) |
| 2015.02 | 경관협정 집중검토회의 (2회) / 생각나무 파트너스 강주형소장 특강 |
| 2015.03 | 경관협정 집중검토회의 (1회) / Studio DMG 이한송 소장 특강 |
| 2015.03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회원 37인) |

경관협정 주요내용

| 구분 | 내용 |
|-------|---------------------|
| 관문경관 | 입구조형물 개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 |
| 건축물 | 지붕 및 옥상 정비 |
| 옥외광고물 | 간판 크기, 색상, 디자인 정비 |
| 벤치 | 벤치모양, 규격, 디자인 고려 |
| 조형물 | 조형물 배치시 규격 고려 |
| 동네박물관 | 옛 영정로 거리의 생산품 전시 |

참여연구진

| | | | |
|-------------|-----|-----------|-----|
| 연구책임 | 김경인 | (주)브이아이랜드 | 대표 |
| 연구원 | 김종필 | (주)브이아이랜드 | 부소장 |
| | 한안지 | (주)브이아이랜드 | 과장 |
| | 유재승 | (주)브이아이랜드 | 과장 |
| | 이경민 | (주)브이아이랜드 | 대리 |
| | 마지욱 | (주)브이아이랜드 | 사원 |
| | 장유기 | (주)브이아이랜드 | 사원 |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 경관계획